

3832.5
390.913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日本の 防衛概念과 軍事力增強 展望

— 韓半島 軍事狀況 및 緊張緩和에 미치는 影響 —

A Concept of Defense and Prospect of Military Reinforcement in Japan

- An impact on the military situation and tension redu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Handwritten notes in Korean and English, including "10월 14일", "김정일", "김일성", and "김정일" written vertic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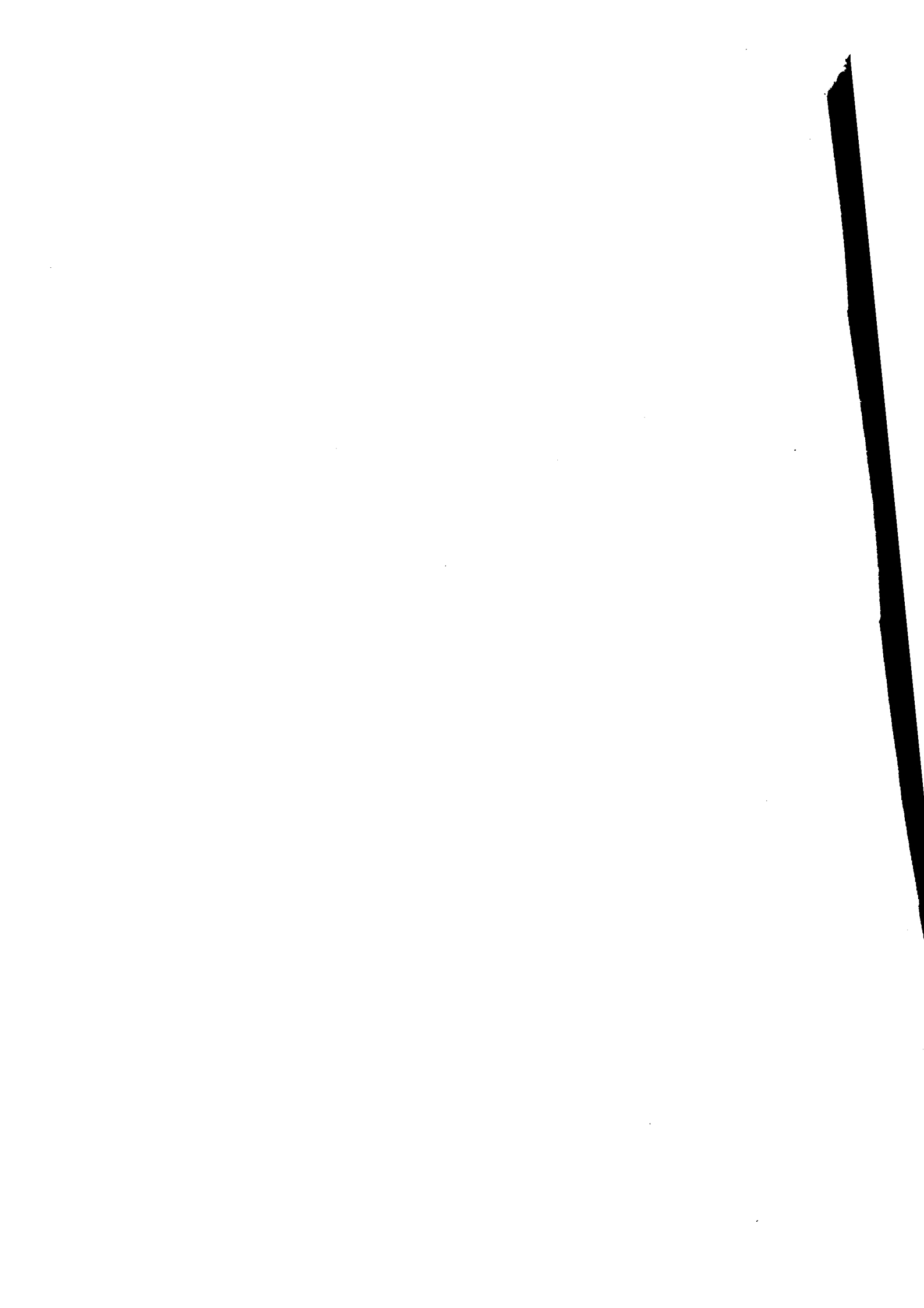


研究責任 (略歷)

崔 敬 洛
延世大學校 大學院 政治學科 (碩士)
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課程 (國際政治學)
日本 東京大學 政治專門課程
延世大學校 政法大學 教授 歷任
國防大學院 教授 (現在)

刊行責任 申 德 洙 (政策企劃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序 言

I. 日本의 防衛概念과 軍事政策 및 軍事力增強 趨勢	5
1. 第1次防衛力整備計劃 (1958年~1960年) 以前	5
2. 防衛力整備計劃의 着手以後	22
II. 80年代의 日本의 防衛概念과 中·長期 軍事政策 및 軍事力增強 展望	51
1. 基本前提	51
2. 对内外的 与件	61
3. 展 望	76
III. 韓半島의 軍事狀況에 미치는 影響	81
1. 日本의 对韓半島軍事政策의 基本利益	81
2. 日本의 对韓半島軍事政策의 基本前提	82
3. 韓半島의 軍事狀況에 미치는 影響 判断	82
IV.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한 寄与度 評價	85
V. 韓國의 平和統一政策에 活用하는 政策方向	87

序 言

本 論文은 東北亞秩序의 形態와 韓半島 情勢를 考慮한 日本의 防衛概念과 軍事政策·戰略 및 軍事力增強의 變遷過程을 分析·檢討한 結果를 바탕으로 하여 그 展望을 導出함으로써 이에 따른 韓半島의 軍事狀況에 미치는 影響을 判斷하고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한 寄与度의 評價를 試圖해 보았다. 그리하여 韓國의 平和統一政策에 活用하는 政策方向을 國土統一院의 立場에서 생각해 보았다.

따라서 本 論文은 政策研究報告書의 性格을 띤 것이며, 그 構成에 있어서

- I. 日本의 防衛概念과 軍事政策 및 軍事力增強 趨勢
 - II. 80年代의 日本의 防衛概念과 中·長期軍事政策 및 軍事力 增強 展望
 - III. 韓半島의 軍事狀況에 미치는 影響
 - IV.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한 寄与度 評價
 - V. 韓國의 平和統一政策에 活用하는 政策方向
- 의 5部로 나누어 分析·評價하였다.

研究方法은 原資料를 中心으로한 歷史的·機能的 接近方法과

構造分析方法을 援用하였다.

期待되는 効果로서는 80年代의 日本의 防衛概念과 軍事政
策·戰略 및 軍事力增強이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한 寄与度를 把握하고 韓國의 平和統一政策에 活用할 수
있는 政策的 考慮事項의 把握에 두었다.

I. 日本의 防衛概念과 軍事政策 및 軍事力增強 趨勢

1. 第1次防衛力整備計劃(1958年~1960年)以前

가. 警察予備隊의 創設

自衛隊의 前身인 警察予備隊는 1950年8月10日 「포쓰담」 政令 第260号에 依拠한 “警察予備隊令”에 의해서 創設되었다. 이 警察予備隊의 急速한 創設은 韓半島에 있어서 北傀軍의 38度線全域에 걸친 奇襲的 全面電擊戰을 敢行한 後, 그 南侵 領域이 急速度로 擴大되고 이를 沮止·擊退하기 위하여 支援投入된 日本의 九州南部 및 山口県駐屯 美第24師團 第34聯隊의 北傀第4師團主力과의 7月6日에서 8日에 걸친 平沢, 安城戰線에서의 予期치 않은 敗退라고 하는 急迫한 戰況속에서, 7月7日 「유엔」 安保理事會의 決議에 依拠, 史上最初의 「유엔」軍이 誕生, 그 總司令官으로 任命된 聯合國最高司令官 「맥아더」元帥에 의하여 7月8日付로 吉田首相에게 보내진 書翰을 통해서 日本 政府의 警察予備隊의 創設要請을 承認한다고 하는 形式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警察予備隊는 當時 日本이 敗戰國으로서 聯合國 (主로 美國)의 占領下에 있었기 때문에 獨自的인 防衛概念과 軍事政策을 갖지 못하였다. 即, 聯合國總司令部에 의해서 提示된 “警察予備隊創設에 관한 大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① 警察予備隊의 性格은 事變, 暴動等에 對備한 治安警察隊이며,
② 治安警察隊로서 알맞는 機動力 및 裝備 卽, 拳銃, 小銃等の 武器를 保有한다 (1) 라고 하여 治安確保를 위해서 重點的으로 運用되도록 限定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警察予備隊令에서 再確認되었다. 警察予備隊令 第1條 目的은 “우리 나라(日本)의 平和와 秩序를 維持하고 公共의 福祉를 保證하는데 있어 必要한 限度內에서 國家地方警察 및 自治體警察의 警察力을 補完” 하는데 두었으며; 第3條의 任務에서 “治安維持를 위하여 特別한 必要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內閣總理大臣의 命을 받아 行動” 하는 警察의 任務範圍에 限定되었다.

그런데 한가지 重要한 事實은 이의 創設準備를 擔當한 國家地方警察本部에서는 警察予備隊의 編成·裝備等이 從來의 警察과는 다른 것이라는 點과 將次의 國際情勢의 推移에 따라 漸次 그 性格을 바꾸고 成長할 可能性이 있다는 點等의 判斷下에 部隊創設의 重大性을 새롭게 認識하고·全機能을 들여서 이 業務를 完隊하는데 注力하였다는 點이다. (2) 특히 첫째, 一般隊員의 募集에 있어서 8月13日에 接受를 始作해서 不過 1週日만인 8月20日의 마감날에 募集定員 7萬

註 1) 戰略問題研究会編, “戰後世界軍事資料(1945~1969) 2,” 原書房, 1971, P.593.

2) 上掲書, p.593.

5,000名에 대하여 約 5.1倍인 38万 2,003名の 志願者가 殺到하였는데, 더우기 募集條件이 35歲까지로 되어 있고 幹部로 登用될 筈이 있다는 것 때문에 旧正規軍人(下士官 및 兵)出身이 그 多大數를 占하였다는 것이며, 여기에 聯合國總司令部 第2部(G-2)에서 日本防衛의 現實的 立場에 立脚한 旧軍人中心의 部隊創設을 強力히 推進함으로써 旧正規軍人(下士官 및 兵)出身이 一般隊員의 根幹을 이루는 成果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³⁾ 둘째는 部隊幹部의 採用에 있어서 旧軍의 將校出身을 採用토록 하는데 成功하였다는 것이다. 即, 追放解除된 陸士 58期, 海兵 74期 및 同 相当期生 245名을 採用한데 이어서 旧陸海軍의 領官級將校中에서 經驗을 가진者 가운데 適任者 406名을 採用하고 또한 旧陸海軍의 尉官級將校 407名을 採用하는 등, 차례차례로 幹部의 充實化를 實現해 나갔다.

이에 따라 비록 武器, 彈藥, 車輛 等の 主要裝備뿐만 아니라, 軍服, 軍靴에 이르는 全裝備가 美軍의 支援에 의해서 充足되었

註 3) 敗戰當時인 1945年의 兵力은 總 826万 3,000名(이 中, 陸軍 640万名, 海軍 186万 3,000名)이었다. 비록 이들 가운데 많은 數가 入隊前의 職場에 復歸하였다 하더라도 敗戰으로 因한 極甚한 經濟破綻으로 失業狀態에 있었기 때문에 戰鬪經驗者로서 17万 5,000名을 채우기란 容易한 일이었다. 堂場肇, 世界の中の日本 - 安全保障の構想 -, “防衛政策の現状と課題”, 潮出版社, 1963, pp. 141-178 參照.

가는 하였지만, 教育·訓練体系面에서의 整備作業과 더불어 教育·訓練은 入隊와 同時に 着手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하여 警察予備隊는 本부와 部隊로 나누어 組織되었고 本부는 長官의 補佐機關으로서 文官 100名으로 構成되고 部隊는 7万 5,000名으로 編成되었다.

이 1950年度の 防衛費는 1,310億「엔」(約3億 6,400万「달러」)이며, GNP에 대하여 3.3%, 一波會計裁出費에 대하여는 19.21%였다.

나. 海上警備隊의 創設

警察予備隊의 創設動機가 6.25動亂에 의한 駐日美軍의 派韓과 作戰支援基地로서의 機能을 円滑하게 遂行하기 위해서는 日本内に 있어서의 不法分子의 妨害와 破壞活動을 防止·排除함으로써 国内治安을 維持할 것이 緊要하다고 하는데 있었다(4)

따라서 平時부터 治安維持의 責任을 지고 行動하며, 警察官이

註 4) 6.25動亂當時인 1950年末에 海上保安庁 艦船 11隻이 元山港掃海作戰時, 「유엔」軍司令官指揮下의 韓·美聯合機雷除去作戰에 參與하였으며, 그 中 1隻이 機雷에 觸発·沈沒함으로써 乗務員이 戰死한 事實이 最近, 日本에서 發刊된 “艦船”이라는 雜誌에 掲載되었다. 이 事實에 대하여 統合幕僚會議 事務局長(1978年 當時)인 常広栄一海將은 認定하면서, 當時에 戰死한 사람 10名의 慰靈祭가 每年 4月 四國의 高松市 西方에 있는 多度津(다도쓰)의 金比羅(곰베라)神社에서 行해지고 있으며, 그때마다 海上幕僚長(海軍參謀總長)이 參席한다는 것이다.

各其 司法權을 가지고 行動하는 一般警察에 대하여 警察予備隊는 治安維持를 위하여 特別한 必要가 있을 경우에만 總理大臣의 命을 받아 “部隊行動”을 하는, 所謂 陸軍部隊의 役割을 遂行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國內治安維持를 위한 體制의 整備를 推進하는 한편, 海上警備力の 強化도 後続하여 推進해 나갔다. 即, 日本政府는 海上警備力の 強化에 관한 人員 및 組織과 其他의 準備를 위한 Y委員會를 1951年 10月 22日 設置하고, 旧海軍軍人和 海上保安庁(1948年 4月 27日設置) 職員으로 構成된 Y委員會로 하여금 美軍으로부터 供與되는 武器, 裝備, 艦艇 等の 受領, 保管整備 및 全性能發揮에 適合한 制度의 立案計劃과 이의 實現을 促進시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Y委員會는 海上保安強化를 위한 機關으로서 “海上警備隊”를 新設하고 隊員定員數를 우선 1952年度에 6,000名으로 한다는 等の 構想을 提示하였다.

이에 대한 檢討끝에 1952年 4月 26日 制定된 “海上保安庁의 一部를 改正하는 法律”에 依拠, 海上保安庁內에 海上警備隊가 創設되게 되었다.

그 任務는 海上에 있어서의 人命 내지는 財産의 保護, 또는 治安의 維持를 위하여 緊急한 必要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海上에서 必要한 行動을 取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任務의 側面에서 볼 때 警察予備隊가 陸軍部隊의 性格을 띤 것처럼 海上警備隊는 海上自衛隊의 前身으로서 海軍部隊의 性格을

되고 充足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隊員數는 Y委員會가 建議한 6,000名線을 훨씬 下廻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幹部 75名, 士補(下士官級)以下 726名을 要員으로 하고 그 後 充員을 繼續, 總 1,761名으로 編成되었다.

이 海上警備隊가 創設된 2日後인 1952年4月28日 對日平和 條約(1951年9月8日調印)과 美·日安全保障條約(1951年9月 8日調印)이 同日字로 發効되었고 이에 따라 聯合國司令部는 廢止되었다.

이 時點부터 日本은 對日平和條約 第5條C項의 “聯合國으로서는 日本國이 主權國으로서 國際聯合憲章第51條에 揭示된 個別的 또는 集團的 自衛의 固有의 權利를 갖는다는 것 및 日本國이 集團安全保障의 事項을 自發적으로 締結할 수 있다는 것 을 承認한다”는 條項에 依拠, 個別的 自衛의 權利와 集團的 自衛의 權利를 保有하게 된 것이다. (5) 同時에 이 두가지 權利의 行使形態로서 美·日安全保障條約에 依拠, ① 日本國은 “그 防衛를 위한 暫定措置로서” 日本國에 對한 武力攻擊을 阻止하기 위하여 日本國內 및 그 附近에 美國이 그 軍隊를 維持할 것 을 希望한다는 것(前文 中半), ② 美國은 平和와 安全을 위 하여 現在 若干의 自國軍隊를 日本國內 및 그 附近에 維持할

註) 自衛隊의 充足은 自衛隊가 戰力이나 아니냐하는 與否를 둘러싸고 合憲, 違憲論爭을 불러 일으키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決判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意思가 있다는 것(前文 後半), ③ 平和條約 및 이 條約의 効力 發生과 同時에 美國의 陸軍, 空軍 및 海軍을 日本國內 및 그 附近에 配備할 權利를 日本國은 許與하고 美國은 이를 受諾한다는 것(第1條前半), ④ 이 軍隊는 極東에 있어서의 國際의 平和와 安全의 維持에 寄與하며, 또한 一 또는 二以上の 外部의 國家에 의한 敎唆 또는 干涉에 의하여 惹起된 日本國에 있어서의 大規模의 內亂 및 騷擾를 鎮壓하기 위해서 日本國政府의, 明示된 要請에 應하여 주어지는 援助를 包含해서, 外部로 부터의 武力攻擊에 대한 日本國의 安全에 寄與할 수 있도록 使用할 수 있다는 것(第1條後半), ⑤ 美國은 日本國이 攻擊的인 威脅이 되고 또는 國際聯合憲章의 目的 및 原則에 따라서 平和와 安全을 增進하는 것 以外에 使用될 軍備를 保有하는 것을 恒常 避하면서, 直接 및 間接侵略에 대한 自國의 防衛를 위하여 漸增的으로 스스로 責任을 질 것을 期待한다는 것(前文 後半)으로서, 이에따라 첫째 直接 및 間接侵略에 대한 防衛를 위하여 漸增的으로 스스로 責任을 질 수 있을 때까지의, 暫定措置로서 日本은 駐日美陸軍, 空軍 및 海軍에 依存한다는 點, 둘째 日本은 平和와 安全增進의 目的, 以外의 攻擊的 威脅이 되는 軍備의 保有를 除外한, 限定的인 再軍備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國際的으로

公認되었다. (b)

다. 保安庁의 設置에 따른 保安隊 및 警備隊의 發足

上述한 바와같이 對日平和條約과 美·日安保條約의 發効 및 聯合國總司令部의 廢止를 契機로 日本은 本格的으로 再軍備에의 길을 가게 된다. 그 첫번째 作業이 保安庁의 設置(1952年 8月1日)에 의한 陸·海兩面에 걸친 防衛力의 強化이다.

即, 保安庁이 警察予備隊를 引繼하는 保安隊와 海上警備隊를 引繼하는 警備隊를 統合管理運營함으로써 陸·海의 防衛를 一體化하여 効率的으로 運用할 수 있도록 防衛體制의 整備가 部分的이긴 하지만 이루어진 것이다.

保安隊와 警備隊의 任務는 警察予備隊 및 海上警備隊의 任務와 거의 變함이 없으나, 實際의 部隊行動에 관한 具體的인 事項이 明示되었다는 點과 武器의 保有 및 그 使用에 관하여 特히 広範한 權限이 認定되었다는 點에서 크게 變更되었다.

保安隊의 部隊行動에는 ① 非常事態에 있어서 特히 必要하다

註6) 이와 關聯하여 1951年9月5日 「그로미코」蘇聯代表는 「샌프란시스코」對日講和會議에서 演說한 가운데 “日本의 軍備에 관하여 陸軍 15万名, 戰車 200台以內, 海軍 2万 5,000名, 總噸數 7万 5,000噸, 空軍 2万名, 戰鬪機, 偵察機 200台, 輸送機·練習機 150台로 하고, 爆擊機, 原子武器, 細菌武器, 化學武器를 包含하는 大量殺戮武器, 射程 30km 以上의 大砲, 人間魚雷의 保有는 認定해서는 안된다는 提案”을 하였다. 堂場 盛, 前掲書, p.150.

고 認定될 경우에 行하는 “命令出動”, ② 都道府県知事が 治安維持上 重大한 事態에 処하여 不得已하다고 認定하였을 경우 그 要請에 立脚하여 行하는 “要請出動”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었고 警備隊는 海上에 있어서 人命財産의 保護 또는 治安維持를 위하여 緊急히 必要가 있을 경우, 警備隊의 部隊가 海上에 있어서 必要한 行動을 取하는 “海上에 있어서의 警備行動”을 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保安隊와 警備隊는 共히 天災地變 其他의 災害에 있어서 人命 또는 財産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경우에 部隊를 派遣하는 災害派遣을 하도록 되었다. 兵力은 保安隊가 11万1,752名(이 中, 1,752名이 文官), 警備隊가 7,828名(이 中 238名이 文官)이었다. 裝備는 保安隊가 美極東司令部의 駐日保安顧問部를 통해서 于先 105미리와 155미리 榴彈砲 計 40門 및 20톤 型戰車 40台를 貸与받았고 逐次 火砲, 戰車 等의 重裝備品이 配分·充当되었다. 航空機에 있어서는 航空學校의 設置(1952年 10月 15日)에 따라 連絡機 L 16 20台가 貸与되고 1953年 1月에는 L 16 대신에 L 21 20台를 貸与받음으로써 敗戰後 처음으로 航空機裝備를 保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拳銃, 小銃, 機關銃 等의 小火器로 부터 火砲, 戰車, 航空機 等 重裝備를 漸次 保有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警備隊는 海上警備隊當時 海上保安庁으로 부터 移管된 掃海船 43隻 約 8,900톤을 主軸으로 하여 運用하면서, 美·日船舶貸借協定の 締結(1952年 11月 12日)에 의하여 「프리

케트]艇, 大型上陸支援艇을 引受하는 等으로 補充함으로써 1953年 3月末에는 127隻 約 3萬500톤의 規模가 되었고, 年度末에는 約 5萬톤으로 增大되었다.

防衛費는 1951年度의 1,199億「엔」(約 3億3,000萬「달러」)에 比하여 1,771億「엔」(約 4億9,000萬「달러」)으로 增大되었으며, 이에 따라 GNP對比 2.19%에서 2.78%로, 一般會計歲出對比 18.23%에서 20.76%로 上昇되었다.

또한 特記할 事項으로서는 幹部養成을 위한 教育, 訓練과 軍事科學技術의 充實化에 重點을 두기 始作하였다는 것이다. 即 日本의 國防大學院인 防衛研修所(保安研修所로 發足後, 防衛庁設置後 改稱)와 陸·海·空士官學校인 防衛大學校(保安大學校로 發足後, 防衛庁設置後 改稱)를 發足시켰고 技術研究本部를 設置, 最新 武器, 裝備에 必要한 知識과 技術의 習得을 위한 基盤을 形成하는 契機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保安庁內에 制度調査委員會를 設置하고, 國際情勢의 分析, 主要各國의 軍事情勢, 第3次世界大戰의 可能性과 樣相, 日本의 政策·戰略上의 問題 및 經濟負擔能力 等の 問題에 대한 作業을 推進한 結果, 戰後 日本의 政府機關으로서는 비록 採択되지는 않았으나, 처음으로 防衛計劃을 作成하였다는 것이 特記할 일이다. 即, 1953年 3月 30日에 提出된 制度調査委員會報告 第1次案에 의하면, 12年後인 1965年 까지 陸上兵力: 30萬 470名, 海上兵力: 45萬 5,240톤 367隻 및 11萬 2,600名, 航空兵力: 航空機 6,744台 및 20萬 2,320名

所要經費：日本側 負擔이 5兆3,000億「엔」(約 147億2,222万「달러」), 美国側 負擔이 3兆8,000億「엔」(約 105億6,000万「달러」) 計 9兆1,000億「엔」(約 252億8,000万「달러」)의 規模였다. (7) 이 第1次案의 完成時期를 1965年에 두고 完成時의 年間維持費를 7,400億「엔」(約 2億600万「달러」)으로 策定하였다. 이 規模는 무엇보다도 日本側 負擔 所要經費인 5兆3,000億「엔」의 策定과 그리한 兵力規模를 가진 軍의 建設이 適切한가 하는 問題가 提起되었다. 1965年까지 12年間に 걸쳐 年間 約 4,417億「엔」(約 12億3,000万「달러」)을 軍의 建設費로 支出하게 되는데, 이는 1953年度 當時의 GNP(7兆8,246億「엔」)(約 217億4,000万「달러」)에 대하여 5.7%에 該當되는 것이며, 一般會計歳出 9,655億「엔」(約 26億8,000万「달러」)에 대한 45.8%에 該當되는 莫大한 것이었기 때문에 流産되었지만, 1953年當時에 將次 日本이 61万5,390名 規模程度의 強大한 軍備로 再武裝할 것을 強力하게 要求한 美国의 對日政策의 背景에는 13万6,913名(이 中 戰死者 3万3,629名)의 戰傷者를 내고 約 180億「달러」의 戰費를 投入한 韓國戰爭의 收拾期에 臨하여 東北匪의 安定과 平和維持에 있어서 日本이 第1次的인 防衛責任을 질수있는 同時에 對中·蘇 牽制力으로서의 役割을 할 수 있는 軍事力建設을 促進시킬 것이

註7) 堂場 肇; 前掲書, p.153.

緊要하다고 하는 論議가 活発하게 展開된데 있었다.

특히 美国이 強力하게 希望했던 것은 陸上兵力의 增強이었는데, 32万5,000名 내지 35万名을 要求한 것으로 되어 있다.⁽⁸⁾

이에 대하여 日本側은 憲法上의 制約 等の 困難한 国内事情을 들어서 이에 応하지 않았다. 結局 1953年 10月 吉田首相의 特使로 美国에 派遣된 池田勇人(當時 自由党政調會長)와 「로버트슨」國務次官補間에 「워싱턴」에서 會談이 開催되었고, 여기에서 日本側으로부터 “日本防衛5年計劃·池田試案”이 提示되었다. 即, 陸上: 18万名, 10個師團(但, 1954年度부터 3年間에 達成), 海上: 15万6,500톤, 210隻, 3万1,300名, 航空: 518台(이中 戰爆機·F-84 150台, 邀擊機 F-94 36台, 其他 實用機 218台), 7,600名 및 別途로 「레이다」部隊 1万300名, 經費: 9,000億「엔」(25億「달러」)~年間 3,000億「엔」(約 8億3,000万「달러」)~으로서 이 가운데 日本側이 6,200億「엔」(約 17億2,000万「달러」)을 負擔하고 美国側이 2,800億「엔」(約 7億8,000万「달러」)을 負擔하도록 하는 内容이다.

이 池田試案은 美·日間の 頻繁한 交渉을 거친 끝에 1957年

註8) 堂場 肇, 前掲書, p.154. 福田恆存, 中央公論, “防衛論の進め方についての疑問, 1979年10月特大号, p.89 参照.

6月14日 日本의 国防會議에서 決定된 後, 閣議의 諒解를 얻은 敗戰後 最初의 公式的 防衛計劃인 “防衛力整備目標”, 即, 第1次防衛力整備計劃의 基礎로서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은 1958년부터 1960年度까지의 防衛力整備目標를 陸上自衛隊: 18万名, 海上自衛隊: 約 12万4,000톤, 航空自衛隊: 1,342台로 策定한 것과 比較할 때 陸上兵力은 그대리고 다만 艦艇이 約 3万톤 減少된데 反하여 航空機가 824台로 大幅的인 增加를 보였다고 하는 點에서, 軍事力建設의 重點을 空軍力의 強化에 두었다고 하는데, 다만 그 差異가 있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9)

라. 保安庁의 改編·強化措置에 따른 防衛庁의 設置 및 自衛隊의 發足

防衛庁의 設置와 이에 따른 自衛隊의 發足(1954年7月1日 保安庁法の 改正施行에 依拠) 動機는, 첫째 駐日美軍(沖繩除外)의 漸減(1952年4月 美·日安保條約發効時: 26万名, 1953年末: 25万名, 1954年末: 21万名)⁽¹⁰⁾에 隨伴하여, 国内治安의 維持 및 海上에 있어서의 治安維持를 위한 警備力으로서 強化한다고 하는 從來의 政策方向을 轉換하고 日本이 国土防衛의

註9) 堂場 肇, 前掲書, p.155.

10) 朝雲新聞社, 防衛ハンドブック 54年版, 1979, p.188.

第1次的 責任을 진다는 大前提아래 防衛力으로서의 增強必要性을 認識하게 되었다는 點, 둘째 이에 따라 軍으로서의 體制를 갖출 必要가 생기게 되었다는 點을 들 수가 있다.

그리하여 防衛庁의 設置目的을 “日本の 平和와 獨立을 守護하고 國家의 安全을 保持”한다는 것으로 明示하고, 保安隊를 陸上自衛隊로, 警備隊를 海上自衛隊로 各各 改稱하는 同時에 航空自衛隊를 創設하였다. 이와 併行하여 陸·海·空自衛隊의 綜合的이며 有効한 指揮運用을 圖謀하기 위한 機關으로서 統合幕僚會議가 設置되었다. 그 主任務는 自衛隊의 增強에 隨伴하여 陸·海·空의 各自衛隊를 統合하는 見地에서 防衛計劃, 後方補給計劃, 訓練計劃의 方針을 作成하고 調整하며, 出動時에 있어서의 指揮命令의 統合調整 等に 關하여 防衛庁長官을 補佐하는데 있다. 그 構成은 議長과 陸·海·空自衛隊의 各幕僚長(參謀總長) 3名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特徵은 어디까지나 會議體에 不遇하며, 議長에게는 特定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長官의 命令을 執行할 權限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點이다.

한편 國防에 關聯된 事項에 關한 內閣의 最高 諮問機關으로서 國防會議가 新設되었다. 이 國防會議는 그 後 1956年 7 月에 制定된 “國防會議의 構成等에 關한 法律”에 依拠, 비로소 機能을 發揮하게 되지만, 그 任務는 ① 國防의 基本方針, ② 防衛計劃의 大綱, ③ 防衛計劃과 關聯된 産業等에 關한 調整計劃의 大綱, ④ 防衛出動의 可否, ⑤ 其他 內閣總理大臣(首

相)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國防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는 데 있다. 特徵으로서는, 首相은 防衛出動의 可否와 國防에 關聯된 重要事項에 대하여 國防會議의 審議를 거쳐 國會의 承認을 얻어서 發令하게 되는데, 但, 特히 緊急을 要할 때에는 國會의 承認을 必要로 하지 않으나, 專後承認을 얻어야 하며, 承認을 얻지 못할 경우, 防衛出動部隊를 撤収하여야 한다는 點이다. 그 構成은 議長인 首相과 副總理, 防衛庁長官, 外相, 藏相, 經濟企劃庁長官으로 되어 있다. (11) 그리고 必要한 경우, 各省의 大臣을 參席시킬 수가 있다.

自衛隊는 “日本의 平和와 獨立을 守護하고 國家의 安全을 保持하기 위하여 直接侵略 및 間接侵略에 대해서 日本을 防衛하는 것을 主된 任務”로 하여 充足되었다. 이 任務를 遂行하기 위한 行動範圍를 防衛出動, 治安出動, 海上에 있어서의 警備行動, 災害派遣 및 領空侵犯에 대한 措置, 機雷等の 除去의 여섯가지로 規定하였다.

防衛出動이란 外部로부터의 武力攻撃(外部로부터의 武力攻撃이 있을 憂慮가 있는 경우도 包含)에 있어서, 日本을 防衛하기

註 11) 國防會議의 構成員으로 1972年 10月 閣議決定에 의하여 新規로 國家公安委員長, 官房長官, 通産相, 科學技術廳長官을 追加시켰으나, 이에 따른 法 改正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경우, 国会의 承認을 얻은 後, 或은 特히 緊急한 必要가 있을 때는 国会의 承認을 얻지 않고, 自衛隊의 全部 또는 一部가 首相의 命令으로 出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경우라도 国防會議의 審議는 거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防衛庁長官은 事態가 緊迫하여 防衛出動命令이 發令될 것이 予測될 경우에 있어서, 이에 対処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였을 때에는 首相의 承認을 얻어서, 自衛隊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해서 防衛出動待機命令을 내릴 수가 있다 (自衛隊法第 76 条 및 第 77 条参照).

治安出動이란 間接侵略 其他 緊急事態에 있어서, 一般의 警察力으로서는 治安을 維持할 수가 없다고 認定될 경우, 自衛隊의 全部 또는 一部가 首相의 命令으로 出動하는 것을 말한다. 治安出動에 있어서도 国会의 承認 또는 追認을 얻어야 하지만 防衛出動의 경우처럼 国防會議의 審議를 거칠 必要는 없다.

여기에서도 防衛庁長官은 事態가 緊迫하여 治安出動命令이 發令될 것이 予測될 경우에 있어서, 이에 対処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였을 때에는 首相의 承認을 얻어서, 自衛隊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해서 治安出動待機命令을 내릴 수가 있다. 但, 防衛出動待機命令時와 다른 點은, 防衛庁長官이 國家公安委員會와 緊密한 連絡을 保持하도록 되어 있는 點이다 (自衛隊法第 78 条 및 第 79 条参照). 또한 都道府縣知事의 要請에 의한 治安出動도 首相이 發令할 수 있다 (自衛隊法第 81 条).

任務中 海上에 있어서의 警備行動, 災害派遣 및 領空侵犯에 대한 措置, 機雷等の 除去는 防衛庁長官의 管掌事項으로 되어 있다.

自衛隊는 이러한 任務의 遂行에 必要한 武器를 保有할 수 있으며 (自衛隊法 第 87 條), 防衛出動命令을 받은 自衛隊는 日本을 防衛하기 위하여 必要한 武力을 行使할 수가 있도록 되었다 (自衛隊法 第 38 條).

以上の 自衛隊의 任務와 關聯된 行動範圍로서의 “防衛出動” 과 “武器의 保有” 및 “武力의 行使”는 憲法 9 條 1 項의 “戰爭拋棄” 條項과 2 項의 陸·海·空 및 其他 “戰力の 不保持” 및 “交戰權의 否認” 條項에 抵触된다거나, 안된다거나 하여 그 與否를 둘러싸고 以後 政府·與黨 (自由民主黨) 과 野黨間에 그리고 國民間에 違憲이다 合憲이다하는 憲法論爭을 불러 일으키는 契機가 되었다. (12)

要컨대 防衛庁의 設置와 自衛隊의 發足에 따라서 日本은 軍의 體制를 갖추고 本格的으로 再軍備를 推進하게 된 것이다. 即, 첫째 國土防衛를 主된 任務로 하는 防衛庁~비록

註 12) 自衛隊의 合憲성과 違憲성은 憲法 第 9 條 1 項의 戰爭拋棄 條項과 第 2 項의 戰力不保有條項의 解釋을 둘러싸고 保守와 革新間에 論爭이 벌어지고 있다.

防衛省(大臣)으로서가 아니고 總理府의 外局으로서 經濟企劃庁
等과 同格의 庁(長官)으로 設置되기는 하였지만 防衛庁長官은
國務大臣으로서 閣議에 參與하고 또한 國防會議의 主要構成員임
으로 實質적으로는 國防省 또는 國防部와 同一하다~을 設置하
였다는 것, 둘째 防衛庁內에 陸·海·空 3自衛隊의 綜合的이며
有效한 指揮運用機關으로서 統合幕僚會議~合同參謀會議와 同一한
性格~를 設置·運用하게 되었다는 것, 셋째 防衛出動 및 間接
侵略事態時의 治安出動이라는 形態로 軍事行動을 取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武器를 保有하고 武力行使를 하는 陸上自衛隊,
海上自衛隊, 航空自衛隊라고 하는 名稱을 가진 陸軍, 海軍, 空軍
을 實質적으로 保有하게 되었다는 것, 넷째 國防政策의 基本方
針, 防衛計劃의 大綱等 國防에 關聯된 重要事項을 審議·決定
하는 國防會議를 內閣에 設置하였다는 것을 綜合해 볼 때, 敗
戰後 日本의 防衛概念과 軍事政策의 設定 및 軍事力規模의 樣
態는 1954年의 時点부터 本軌道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發足當時의 陸上自衛隊는 13萬9,628名(이 中 文官이 9,628
名), 海上自衛隊는 1萬6,385名(이 中 文官이 577名) 艦艇
約 5萬8,000톤 航空機 約 60台이며, 航空自衛隊는 6,738名
(이 中 文官이 455名) 航空機 約 150台의 規模였다.

2. 防衛力整備計劃의 着手以後

가. 國防의 基本方針의 制定

防衛庁이 設置된 後, 防衛力整備計劃에 對한 策定準備作業을 推進한 結果, 國防基本政策方向인 “國防의 基本方針”이 1957年 5月 20日 國防會議의 閣議에서 決定되었다. 이 國防의 基本方針은 此後 日本의 國防政策의 基礎를 이룬다.

國防의 基本方針에 있어서 國防의 目的을 “直接 및 間接의 侵略을 未然에 防止하고, 萬一 侵略이 行하여졌을 때에는 이를 排除함으로써 民主主義를 基調로 하는 日本의 獨立과 平和를 守護하는데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國防의 目的에는 軍事力에 의한 防衛를 그 前提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13)

그 基本方針으로서, ① 國際聯合의 活動을 支持하고 國際間的 協調를 圖謀하여 世界平和의 實現을 期한다는 것, ② 民生을 安定케 하고 愛國心을 昂揚케 하여 國家의 安全을 保障하는데 必要한 基盤을 確立한다는 것, ③ 国力과 國情에 따라 自衛를 위하여 必要한 限度에 있어서 效率적인 防衛力을 漸進적으로 整備한다는 것, ④ 外部로부터의 侵略에 對해서는 將次 國際聯合이 有效하게 이를 沮止할 機能을 遂行할 수 있도록 이르기까지는 美國과의 安全保障體制를 基調로 하여 이에 對処한다는 것으로 策定하고 있다. 이에 따라 日本의 國防基本政策方向은

註 13) 日本防衛研修所, “國防關係用語集” (講義資料 76L0共-11), 1967, pp. 41-42.

日本防衛研修所, “軍事政策概論 (講義資料 73L0軍-3), 1973, 參照.

첫째로 国力과 国情 다시말해서 国力과 国内外情勢의 두가지 側面을 考慮하고 自衛를 위한 必要한 限度에 있어서 效率的으로 防衛力을 漸進的으로 整備해 나간다는 것이며, 둘째로 外侵에 대하여는, 美国과의 安全保障体制 即, 美·日安保条約 第1条에 依拠한 駐日 및 日本附近配備의 美陸·海·空軍의 使用을 基盤으로 하여 이에 對処한다는 것이다.

이에 立脚하여 1950年代 當時의 日本의 防衛概念은 直接侵略에 대해서는 거의 美国의 支援에 依存하는 한편으로 自衛를 위한 必要 限度内에서 国力과 国内外情勢를 考慮하면서 漸進的으로 自衛隊를 增強해 나간다는 것으로 評價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自衛를 위한 必要한 限度”라고 하였지만, 그 必要한 限度란 어느 程度의 水準을 말하는가, 그리고 “效率的인 防衛力”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또한 “漸進的인 整備을 해나간다”고 하는데 漸進的이란 언제까지, 또 어느 水準까지 차차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가, 整備란 文字 그대로 뒤쫓이거나, 풀어진 것을 가다듬어 整理하여 바로 갖춘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가, 또는 任務上 軍隊라고 하는 것이 明白하면서도 굳이 自衛隊라는 名稱을 使用하는 것처럼, 整備라는 이름의 增強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疑問이 提起된다.

이 諸疑問은 此後의 政府·与党的 見解라든가 防衛力整備計劃의 推移를 통해서 하나하나 解明해 나갈 수 밖에 없다.

특히 “自衛를 위한 必要한 限度”와 關聯하여 1956年2月

29日 衆議院 内閣委에서 当時 船田防衛庁長官이 代読한 鳩山首相의 答辨에서 “日本에 대하여 急迫不正한 侵害가 行하여지고, 그 侵害의 手段으로서 日本国土에 대하여 誘導彈等에 의한 攻撃이 行하여졌을 경우, 앞아서 自滅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憲法의 趣旨로 하는 바라고 하기에는 到底히 생각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攻撃을 막는데 있어서 不得已한 必要最小限度의 措置를 取한다는 것, 例컨데 誘導彈等에 의한 攻撃을 防禦하는데 있어서 다른 手段이 없다고 認定되는 限, 誘導彈等の 基地를 때리는 것은 法理的으로는 自衛의 範圍에 包含되며 可能한 것으로 생각한다.”⁽¹⁴⁾ 라고 하여 “敵의 誘導彈基地를 攻撃할 수 있는 水準”을, 自衛를 위한 必要한 限度의 軍事力增強水準으로 明示하였는데, 이러한 層懲報復概念은 戰略核武器가 高度로 發達하게 됨으로써 1970年初에 大幅적으로 修正되었다.

나. 防衛力整備目標 (第1次防衛力整備計劃~1958 - 1960年)의 策定
國防의 基本方針에 依拠, 1953년부터 1960년까지의 防衛力整備目標를 設定한 防衛力整備3個年計劃이 敗戰後 最初로 1957年6月14日 國防會議의 決定과 閣議의 諒解를 얻어 策定되었다. 이 防衛力整備 目標는 다음의 點을 留意하여 作成되었는

註 14) 朝雲新聞社, 防衛ハンドブック. 54年版, 1969, p. 329.

데, 卽, ① 各種新式武器에 대해서는 自衛를 위한 必要한 限度에 있어서 當分間 研究開發面에 注力함과 同時에 重要裝備品에 대하여는 逐次 그 改善을 圖謀한다. ② 裝備品の 整備에 있어서는 國內生産에 의하는 것 以外에 艦艇 및 航空機의 一部를 비롯하여 相當部分에 대하여 美國으로부터의 供與를 予定한다⁽¹⁵⁾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目標은 内外情勢의 推移等에 隨伴하여 隨時로 再檢討되며, 特히 科學技術의 進歩에 卽應하여 新式武器의 研究開發의 促進과 編成 및 裝備의 刷新을 圖謀함으로써 “防衛力의 充實을 期한다.”⁽¹⁶⁾ 는데, 이에 따른 陸·海·空의 骨幹이 되는 防衛力의 整備와 併行하여 “防衛産業의 整備에 대한 所要의 措置를 講究.”⁽¹⁷⁾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防衛力整備의 目標로 볼때, “整備”란 “增強”을 뜻하는 것이 明白하다.

이에 따라 陸上自衛隊는 增強目標를 13 万名에서 18 万名으로 (이 外에 予備自衛官~予備役~의 定員을 1 万 5,000 名策定), 또한 海上自衛隊는 1 万 5,808 名, 約 5 万 3,000 톤의 艦艇과 約 60 台의 航空機로부터 2 万 7,667 名, 約 12 万 4,000 톤의 艦艇

註 15) 朝雲新聞社, 上掲書, p. 24.

16) 朝雲新聞社, 上掲書, p. 24.

17) 朝雲新聞社, 上掲書, p. 25.

및 約 222 台의 航空機를, 그리고 航空自衛隊는 6,287 名, 約 150 台의 航空機保有에서 3 万 3,225 名, 1,342 台의 航空機를 保有하는 것으로서 大幅的으로 增大하여 策定하였던 것이다. 計劃完了年度인 1960 年度末 実績에 있어서 陸上自衛隊가 1 万 名未達인 17 万 名과, 予備自衛官 1 万 5,000 名의 定員으로 運用 되고, 海上自衛隊가 2 万 7,667 名, 約 9 万 9,000 톤의 艦艇과 다시 217 台의 航空機를 航空自衛隊가 3 万 3,225 名, 1,133 台의 航空機를 保有하기에 이르렀는데, 1954 年の 自衛隊 充足 當時 와는 比較가 되지 않을 程度로 크게 增強되었다.

國防費는 3 年間に 4,614 億[엔](約 12 億 8,200 万「달러」)이 投入되었으며 GNP 에 대하여 平均 1.4%, 一般会計 歳出에 대하여 平均 10.8% 였다. 그런데 1954 年부터 1957 年까지의 國防費 總額은 5,609 億[엔](約 15 億 6,000 万「달러」)임으로, 結果的 으로는 1960 年度에 達成한 防衛力 增強에 있어서, 總計, 約 28 億 4,200 万「달러」가 投入된 셈이다. (18)

이 期間中, 即 1950 年代 後半에 있어서의 防衛政策은 國防의 基本方針에 立脚하여 防禦目的 用戰力の 保有⁽¹⁹⁾를 위한 研究開

註 18) 朝雲新聞社, 上掲書, p. 44 參照:

19) 이 點에 關聯하여 伊能防衛庁長官은 衆議院內閣委(1959. 3. 19)에서 敵의 誘導彈基地를 때리는 防禦用 反擊武器와 攻擊的 威脅을 주는 攻撃用武器는 別個의 問題라고 言明하였다. 朝雲新聞社, 上掲書, p. 330.

정의 促進과 武器·裝備의 國産化 및 美·日安保條約의 改定에 置重하였다.

結局 目標達成年度인 1960년에 이르러서 日本의 防衛概念이 劃期的으로 바뀌어지는 重要한 條約을 美國과 새로이 締結함으로써 防衛概念은 새로운 面貌를 갖게 된다. 即, 1960年 1月 19日 [워싱턴]에서 調印(同年 6月 23日 發効)된 美·日間の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이 그것이다. 이 條約은 1951年에 締結된 美·日間の 安全保障條約을 改定한 것이긴 하지만 그 性格은 本質的으로 다르다. 即, 첫째 “締約國은 個別的으로 그리고 相互協力하여 繼續的이며 效果的인 自助 및 相互援助에 의하여 武力攻擊에 抵抗하는 各其의 能力을 憲法上的 規定에 따를 것을 條件으로 하여 維持하고 發展시킨다”(第 3條)라고 하여, 美·日間の 相互援助義務와 憲法의 範圍內에서 武力攻擊에 抵抗하는 能力 即, 軍事力을 維持·發展시키는 義務가 明示되었다는 點, 둘째 “各締約國은 日本國의 施政下에 있는 領域에 있어서 어느 一方에 대한 武力攻擊이, 自國의 平和 및 安全을 危殆롭게 하는 것임을 認定하여 自國의 憲法上的 規定 및 節次에 따라서 共通의 危險에 対処하도록 行動할 것을 宣言한다”(第 5條)라고 하여, 相互防衛義務가 明記되었다는 點, 셋째 “締約國은 이 條約의 實施에 關하여 隨時 協議하고 또한 日本國의 安全 또는 極東에 있어서 國際의 平和 및 安全에 대한 威脅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언제라도 어느 一方의 締

約國의 要請에 의하여 協議한다”(第4條)라고 하여, 이를 根據로 하는 美·日間の 安全保障協議委員會를 發足시키는 基盤이 이루어졌으며, 第6條의 極東條項~日本國의 安全에 寄與하고 또한 極東에 있어서의 國際의 平和 및 安全의 維持에 寄與하기 위하여 美合衆國은 그의 陸軍, 空軍 및 海軍이 日本國에 있어서의 施設 및 區域을 使用하는 것이 許容된다~과 關聯하여, 有事時의 極東事態에 대하여 相互協議하도록 되었다는 點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極東의 範圍는, 1960年2月26日 岸首相이 衆議院 安保特別委에서 밝힌 日本政府 見解에 의하면 一般的 用語로서 使用되는 極東은 地理學上 正確히 劃定된 것이 아니라, 兩國의 共通關心의 焦點이 되는 極東의 區域이며, 이 條約에 관한 限, 駐日美軍이 日本의 施設 및 區域을 使用해서 武力攻擄에 대한 防衛에 寄與할 수 있는 區域 即, 防衛區域으로서 大體로 「필리핀」以北과 日本 및 그 周邊地域이며, 韓國 및 中華民國의 支配下에 있는 地域을 包含하는데, 具體的으로는 中共이라든가, 沿海州는 包含되지 않으나, 金門, 馬祖兩島를 넣은 中共沿岸은 이에 包含되고 「하보마이」(齒舞), 「시코망」(色丹), 「크나시리」(國後), 「에프로프」(択捉)는 包含되지만 北千島列島와 樺太는 包含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⁰⁾ 네제는

註 20) 自由國民社, 現代用語의 基礎知識, “極東條項,” 1979, p.110. 朝雲新聞社, 上掲書, pp.341-342.

“合衆國軍隊의 日本國에서의 配置에 있어서의 重要한 變更, 同軍隊의 裝備에 있어서의 重要한 變更 및 日本國으로부터 行하여 지는 戰鬪作戰行動(條約 第5條의 規定에 依拠, 行하여 지는 것을 除外)을 위한 基地로서의 日本國內의 施設 및 區域의 使用은 日本國政府와의 事前 協議의 主題로 한다”(條約第6條의 實施에 관한 交換公文)라고 하여 特히 戰鬪作戰行動을 위한 基地로서 施設과 區域을 使用할 때에는 日本政府와 事前 協議⁽²¹⁾를 하도록 되었다는 點이며, 다섯째 “이 條約이 10年間 効力을 存続한 後는 어느 締約國도 他方의 締約國에 대하여 이 條約을 終了시킬 意思를 通告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이 條約은, 그러한 通告가 行하여진 後, 1年으로 終了한다”라고 하여, 10年의 有効期間이 지난 後에 있어서는 雙方間에

註21) 事前協議의 主題에 대한 衆議院 外務委 및 參議院 豫算委에 配付한(1963年4月25日)外務省資料에 의하면, 日本政府는 다음과 같은 경우, 美·日安保條約上의 事前協議가 行하여 지는 것으로 諒解되고 있다. 即, 1. “配置에 있어서의 重要한 變更”의 경우: 陸上部隊는 1個師團程度, 空軍은 이에 相當하는 것, 海軍은 1個機動部隊程度의 配置이며, 2. “裝備에 있어서의 重要한 變更의 경우: 核彈頭 및 中·長距離「미사일」의 投入 및 이들 基地의 建設, 3. 日本으로부터 行하여 지는 戰鬪作戰行動(條約 第5條에 依拠 行하여 지는 것을 除外)을 위한 基地로서의 日本國內의 施設·區域의 使用~韓半島事態時의 駐日美軍 및 支援 美軍의 作戰 行動은 이에 該當~. 但 配付資料에는 明記되고 있지 않으나, 1960年

어느 一方이든 終了意思의 通告가 없는 限, 自動的으로 그 効力이 延長된다고 하는 点이다. 끝으로 内乱条項이 削除된 点이다.

要컨데 日本은 이 時点부터 美国의 一方的인 防衛支援体制를 脱皮하고 自主的인 軍事力의 維持·發展과 더불어 日本國의 施政下에 있는 領域에 있어서의 武力攻撃에 対処·行動하는, 美国과의 相互防衛義務를 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立脚한 防衛概念의 運轉이 뚜렷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第2次 防衛力整備計劃에서이다.

다. 第2次 防衛力整備計劃 (1962年~1966年)

1961年 7月 13日의 国防會議 및 閣議決定에 의하여 “美·日 安全保障体制下에서 在來型武器의 使用에 의한 局地戰以下의 侵略에 대해서 有効하게 対処할 수 있는 防衛体制의 基盤을 確立하기 위하여 1961年末까지 達成되는 骨幹的 防衛力의 内容 充實을 遂行함과 併行하여 科學技術의 進歩에 即應한 精銳의 部隊建設을 위한 基礎를 培養함으로써 陸·海·空自衛隊의 綜合

2月 6日 衆議院 予算委에서의 藤山外相答辨에 의하면, “撤収, 第3國으로의 移動, 國內에서의 移動, 艦艇 및 航空機의 一時寄港과 着陸, 小部隊의 새로운 配置等은 日本國에의 配置에 있어서의 重要한 變更에는 該當되지 않는다”라고 言明하였다. 朝雲新聞社, 上掲書, pp. 342-343.

防衛力の 向上을 圖謀하는 것⁽²²⁾으로, 防衛力整備의 方針을 確定하였다.

이에 따라 ① 美·日安保体制下에서 在來型武器의 使用에 의한 局地戰以下の 侵略에 대하여 有効히 對処할 수 있는 基盤 確立, ② 骨幹的 防衛力의 內容充實化, ③ 科學技術의 進歩에 即應한 精銳部隊建設을 위한 基礎培養이라고 하는 防衛概念이 確實하게 들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敷衍하여 軍事政策의 次元에서, 첫째, 骨幹的 防衛力의 內容充實化를 ① 裝備의 近代化 및 損耗分의 計劃的 更新, ② 機動力의 增強, ③ 後方支援態勢의 強化 特히 基地等 後方施設의 整備充實, ④ 大략 1個月分의 彈藥等의 備蓄等に 重點을 두고 推進하는 것으로 되었다.

둘째, 精銳部隊建設을 위한 基礎培養에 있어서는, ① 誘導武器의 進歩에 即應하여 「나이크·허큐리즈」地對空誘導彈의 導入 圖謀, ② 其他 近代의 精銳裝備의 一部整備 및 運用研究를 推進한다는 것이다. 셋째, 防衛力向上에 도움이 되는 情報機能의 整備充實化와 技術研究開發을 推進하고, 넷째, 國土와 國民에 密着된 防衛力으로 하기 위하여, 災害派遣, 公共事業에의 協力等 民生協力面의 施策과 騒音防止 對策을 重視한다는 것이다.⁽²³⁾

註 22) 朝雲新聞社, 上掲書, p. 25.

23) 朝雲新聞社, 上掲書, pp. 25-26 參照.

以上の 防衛概念과 軍事政策에 따라 1966 年末까지의 整備目標을 陸上自衛隊 : 18 万名 (이外 13,630 名の 文官), 予備自衛官 3 万名, 13 個師團 (1 個 機械化師團 包含) 및 地对空誘導彈部隊 2 個隊로, 海上自衛隊 : 3 万 4,963 名 (이外 4,980 名の 文官), 艦艇 約 14 万 3,700 噸, 航空機 235 台로, 航空自衛隊 : 3 万 9,553 名 (이外 5,356 名の 文官), 航空機 1,036 台 (地对空誘導彈部隊 2 個隊, 自動警戒管制組織의 建設)로 策定하였다. 1966 年度末 達成実績은 다음과 같다. 即, 陸上自衛隊 : 17 万 1,500 名 (1 次防比 1,500 名增), 予備自衛官 2 万 4,000 名 (1 次防比 9,000 名增), 13 個師團 및 「나이크·허큐리즈」地对空誘導彈部隊 2 個隊. 海上自衛隊 : 3 万 4,963 名 (1 次防比 7,296 名增), 約 11 万 6,600 噸 (1 次防比 1 万 7,600 噸增), 航空機 223 台 (1 次防比 11 台增). 航空自衛隊 : 3 万 9,553 名 (1 次防比 5,328 名增), 航空機 1,095 台 (1 次防比 38 台減), 地对空誘導彈部隊 2 個隊, 自動警戒管制組織의 建設繼續 (1967 年度末에 完成됨)이다.

여기에서의 特徵은 ① 陸上自衛隊를 13 個師團으로 編成하였다는 點, ② 陸·空自衛隊에 「나이크·허큐리즈」地对空誘導部隊를 各各 2 個部隊 配置하였다는 點, ③ 自動警戒管制組織이 거의 完成段階에 들어갔다는 點이다.

第 2 次防에 投入된 總予算規模는 1 兆 3,669 億엔(約 37 億 9,700 万 「달러」)이며, GNP 對 國防費比는 年平均 1.13 %이고,

一般会計歳出對 國防費比는 年平均 3.3%였다. 이 國防費規模는 自衛隊가 發足한 1954년부터 第1次防完了年度인 1960년까지의 7年間に 投入된 約 23億 4,200万「달러」보다도 9億 5,500万「달러」가 더 많은 國防費가 投入된 셈이다.

라. 第3次防衛力整備計劃(1967年-1971年)과 第1次 防衛白書

第3次防에 있어서의 防衛概念은 第2次防時的 것을 그대로 繼承하고 그 위에 “美·日安全保障體制를 基調로 하여, 侵略에 대한 抑止力으로서 有効한 防衛力を 整備”⁽²⁴⁾ 한다는, 抑止力概念을 戰略構想에 導入하였다는 點에서 그 特徵이 있다. 다시말해서 防禦目的用戰力の 範圍를 戰術的 攻勢移轉의 抑止力과 關聯시켜서 政策的으로 規定하였다는 것이다(이 點에 대하여는 後述하는 防衛白書에서 具體的으로 明示된다).

그리고 國防의 基本方針에 立脚한 一般方針을 새로이 策定(第3次防衛力整備計劃의 大綱~1966年11月29日 國防會議 및 閣議決定)하였다. 即, ① 防衛力の 向上에 있어서는 特別히 周邊海域防衛能力 및 重要地域防空能力의 強化와 各種 機動力의 增強을 重視한다는 것. ② 陸·海·空自衛隊의 有機的 協力體制를 推進하고 3自衛隊의 綜合的 運用效果를 높이도록 配慮한다는 것. ③ 所要의 隊員을 確保하고 士氣의

註 24) 朝雲新聞社, 上掲書, p. 27.

高揚 및 熟練度の 向上을 圖謀하기 위하여 処遇改善等の 人事 諸施策을 推進함과 同時에 教育訓練體制를 充實化한다는 것.

④ 有事時, 早速히 事態에 對処하고 行動能力을 繼續적으로 維持할 수 있도록 彈藥의 確保等 後方體制의 充實化를 圖謀한다는 것. ⑤ 防衛力을 國民的 基盤에 立脚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弘報活動, 民生協力施策等을 強化한다는 것이다. (25)

이에 따라 主要整備目標의 主要項目을 軍事政策의 次元에서 다음과 같이 策定하였다.

陸上自衛隊關係: 現有部隊의 充實化等을 위하여, 自衛官의 編成定員(兵力定員)을 18万名으로 한다는 것이며, 機動力을 向上하고 防空能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헬리콥터」, 裝甲車 및 地对空誘導彈部隊를 增強함과 同時에 新裝備를 導入하고 裝備體系를 改善하고 그 以外에 戰車, 對戰車火器等을 更新·增強한다는 것이다.

이 陸上防衛力의 向上을 위한 細部方針으로서 ① 機動力의 向上을 위하여, 大型, 中型의 「헬리콥터」 83台 및 裝甲輸送車輛 約 160台를 取得하고 그밖에 輸送機 10台를 整備하고 또한 戰車 約 280台를 更新한다는 것이다. ② 部隊의 새로운 編成 및 現有部隊의 充實化를 위하여, 陸上自衛官의 定員을

註 25) 朝雲新聞社, 上掲書, p. 27.

8,500名 増加(2次防의 定員 17万1,500名에서 8,500名을 増加한 18万名의 定員으로 한다는 것)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1971年の 完了年度の 達成実績은 裝甲輸送車輛 約160台가 156대로, 陸上自衛官의 定員增加 8,500名이 7,500名(17万9,000名の 定員實現)으로 된 것 以外는 모두 計劃대로 이루어졌다.

海上自衛隊關係: 沿岸, 海峽等 周辺海域의 防衛能力 및 海上交通의 安全確保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護衛艦, 潛水艦等 各種 艦艇의 增強, 近代化를 圖謀함과 同時에 新固定翼對潛機, 飛行艇等을 整備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細部方針으로서 艦對空誘導彈搭載艦, 「헬리콥터」搭載艦等 護衛艦 14隻 및 潛水艦 5隻을 包含하는 艦艇 56隻 約4万8,000톤을 建造하고 그밖에 固定翼對潛機 60台, 對潛「헬리콥터」33台等의 航空機를 整備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達成実績은 PB 10隻等 14隻이 未達成된 42隻(潛水艦 12隻 包含), 約2万8,000톤~總 約200隻 約14万4,000톤~, PS-1機 2台가 未達成된 固定翼對潛機 58台, HSS-2機 1台가 未達成된 對潛「헬리콥터」32台~航空機 總 約240台~이다. 定員은 3万8,323名(文官 4,740名 不包含)이 되었다.

航空自衛隊關係: 重要地域의 防空力을 強化하기 위하여, 地對空誘導彈部隊를 增強하고 新戰鬪機의 整備에 着手함과 同時에 警戒管制組織의 自動化를 完成하는 등 警戒管制能力의 向上과

近代化를 圖謀한다는 것이다. 이의 細部方針으로서

① 地对空誘導彈「호-크」를 裝備한 部隊 및 非核彈頭專用으로 改修된 地对空誘導彈「나이크·허큐리즈」를 裝備한 部隊를 各各 2個隊씩 編成하고 그 위에 各1個隊의 編成準備를 하며, 특히 「나이크·허큐리즈」의 誘導彈 및 「호-크」는 國産化한다는 것이며, ② 將次 防空邀擊能力을 向上하기 위하여, 新戰鬪機의 機種을 選定한 後, 그 增強에 着手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達成実績은 目標 그대로 達成되었고 이에 따라 航空機 約940台를 保有하게 되었다. 定員은 4万1,657名(文官 4,960名 不包含)이 되었다.

2次防과 3次防의 達成実績을 比較해 볼때, 陸上兵力에 있어서 7,500名의 定員이 增加되었고 予備自衛官의 定員은 1万 2,000名 增加되었으며, 「호-크」部隊 2個部隊가 增編되었다. 海軍力에 있어서는 兵力面에서 3,360名의 定員增加와 艦艇 約2万8,000톤의 增大 및 航空機 12台의 增大를 보았다. 空軍力에 있어서는 兵力面에서 2,104名의 定員增加와 航空機에 155台의 大幅的인 減少를 보였다. 특히 航空機의 大幅的 減少原因은 主力戰鬪機들 F4EJ 「팬텀」機로 1969년부터 代替 하는 등 老朽機의 新型機로의 交替때문이다.

其他 T-2 超音速高等練習機, P2J 新銳对潜哨戒機, 「레이다」搭載 警戒機, 輸送機 등의 航空機, 短距離地对空誘導彈(短SAM) 등의 各種 誘導彈과 그 밖의 各種 裝備와 器材에 관한 研究開發을

積極 推進하였다. (26)

3次防에 投入된 國防費는 總 2兆5,272億엔(約 70億 2,000万 「달러」)으로서 年間 平均 約 14億 「달러」를 投入한 셈이다. 그리고 1967年度의 GNP가 約 1,138億 「달러」가 됨에 따라 (1971年度 GNP는 2,342億 「달러」로 急速하게 伸張된다) GNP에 대한 國防費比를 1%以內로 抑制하기 始作하였으며; 이에 따라 3次防에 있어서는 GNP比가 平均 0.84%였다. 一般会歲出에 대한 對比는 平均 7.3%였다.

3次防이 完了되기 前年인 1970年 10月, 最初의 防衛白書가 發表되었다. 이를 契機로 하여 日本의 軍事政策·戰略이 具體化 되었다.

첫째는 專守防衛의 概念이다. 即, “日本의 防衛는 專守防衛를 根本으로 한다. 專守防衛의 防衛力은, 日本에 대한 侵略이 있는 경우에 國家의 固有의 權利인 自衛權의 發動에 의하여, 戰略守勢에 透徹하고 日本의 獨立과 平和를 守護하기 위한 것이다.”(27) 라고 하여 被侵時의 戰略守勢에 透徹한다고 하는 戰略構想을 明白히 하였다. 그러나 이 戰略은 戰術的 攻勢를 全적으로 排除하고 있지 않다는데 그 特徵이 있다. 即 例를 들면 “日本을 攻奪해 오는 上陸用船團이 있을 경우, 이것이

註-26) 朝雲新聞社, 上掲書, pp.26-38 參照.

27) 防衛庁, “日本の防衛” 1970年 10月, p.35.

日本에의 上陸을 企圖하고 있음이 明白할 때는, 미리 攻擊을 加하는 戰術的 攻勢는 可能하다고 하는 것이다.⁽²⁸⁾ 다시 말해서, “防衛上의 必要에서 相對方의 基地를 攻擊을 하는 것이 아니라, 全的으로 日本의 国土 및 그 周辺에 있어서의 防衛를 한다는 것.”⁽²⁹⁾ 인데, 이것은 前述한 바의 1956年2月 鳩山首相이 밝힌 敵基地攻擊概念을 白紙化한 것으로서, 그 決定的인 原因은 戰略核武器가 高度로 發展한데 있다.

이에 따라 防衛力의 限界를 “他國에 侵略的인 威脅을 주는 것, 例컨데 B52와 같은 長距離爆撃機, 攻擊用航空母艦, ICBM等은 保有할 수 없다.”⁽³⁰⁾ 라고 規定하고 있다.

둘째는 核裝備政策이다. 이에 관하여는 “核武器에 대해서는 非核3原則을 取하고 있다. 小型의 核武器가 自衛를 위하여 必要最小限度의 實力以內의 것이고 他國에 侵略的 威脅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이의 保有는 法理的으로 可能하다. 그러나 設史 憲法上 可能하다 하더라도 政策上 核裝備를 하지 않는 方針을 取하고 있다.”⁽³¹⁾ 라고 하여 政策이 바뀌면 小型核武器는 保有할 수 있다는 示唆을 內包시키고 있는 것이다.

註 28) 防衛研修所, “國防關係用語集,” 1967.p.46 参照.

29) 朝雲新聞社, 前掲書, p. 344.

30) 防衛庁, 前掲書, p. 36.

31) 防衛庁, 上掲書, p. 36.

세계는 美·日安保協力이다. 即, “日本の 防衛는 그 不足한 部分을 美軍에 依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日本防衛上 美国에 依存하는 程度는……概略적으로 말해서 核武器를 使用하는 戰爭이라든가 大規模의 武力紛爭의 威脅에 대한 抑制, 直接侵略에 있어서 日本의 領土밖에 대한 戰略攻撃等이다.”라고 하여 美国의 核兩傘依存을 美·日安保協力の 主旨로 하고 있다.

네째는 海外派兵과 徴兵制의 実施이다.

海外派兵은 自衛의 範圍를 넘는 것임으로 하지 않으며, (32)
徴兵制는 憲法上 許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3)

다섯째는 戰力增強 目標의 優先順位를 航空優勢와 制海의 確保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34)

마. 第4次防衛力整備計劃(1972年—1976年)과 第2次 防衛白書 및 防衛計劃의 大綱策定

第4次防의 防衛概念은 第3次防의 것과 大同小異하다. 다만 沖繩의 返還에 따른 沖繩의 防衛를 擔當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主要整備目標과 主要項目의 達成에 있어서는 3次防에 比하여 크게 增強되었다.

註 32) 防衛庁, 上掲書, p. 36.

33) 朝雲新聞社, 前掲書, p. 337.

34) 防衛庁, 前掲書, p. 37.

陸上自衛隊關係： 18萬名의 兵力定員과 戰車 280台(이 中 74式新型戰車 160台), 裝甲車 170台(이 中 73式新型裝甲車 136台), 自走火砲 90門, 「헬리콥터」 154台 等 作戰用航空機 159台 및 地對空誘導彈「호-크」를 裝備하는 部隊 3群의 新設等を 增強目標로 하였다. 그 結果 完了年度인 1976년에는 戰車 249台(이 中 74式新型戰車 129台), 裝甲車 110台(이 中 73式新型裝甲車 76台), 自走火砲 20門, 作戰用航空機 141台 및 地對空誘導彈「호-크」 3群이 새로이 增強되었다.

이에 따라 4次防完了 時點에 있어서의 陸上主要 戰力은 戰車 770台(3次防 約660台), 裝甲車 670台(3次防 約650台), 自走火砲 約80門(3次防 約60門), 作戰用航空機 約330台(3次防 約310台), 地對空誘導彈「호-크」 2群(3次防 5群)의 規模로 強化되었다. (35)

海上自衛隊關係： 4萬2,278名의 定員과, 「헬리콥터」搭載護衛艦 2隻, 艦對空誘導彈搭載護衛艦 1隻, 艦對艦誘導彈搭載護衛艦 1隻을 包含하는 護衛艦 13隻, 潛水艦 5隻 및 補給艦 1隻 等 各種艦艇 54隻 約6萬9,000톤을 建造하고 그 外에 對潛航空機 87台等 作戰用航空機 92台를 增強目標로 하였다.

註 35) 防衛庁, “日本の防衛”, 1977年7月, p. 182.

朝雲新聞社, 前掲書, p. 40.

그 결과 1976년에는 「헬리콥터」搭載護衛艦 2隻, 艦對空誘導彈搭載護衛艦 1隻, 護衛艦 5隻의 計 8隻의 護衛艦과 潛水艦 3隻 및 補給艦 1隻 등 各種艦艇 37隻 約 4萬 8,300 噸이 建造되었으며, 作戰用航空機는 75台가 增強되었다.

이에 따라 4次防完了 時點에 있어서의 海上戰力은 護衛艦 44隻 9萬 2,000 噸, 潛水艦 15隻 2萬 2,000 噸, 機雷艦艇 38隻 1萬 5,000 噸, 哨戒艦艇 30隻 7,000 噸, 輸送艦 5隻 9,000 噸, 特務艦艇 15隻 2萬 2,000 噸, 支援船 334隻 2萬 7,000 噸 總 431隻 19萬 4,000 噸 (3次防 約 210隻 約 17萬 4,000 噸) 으로 增強되었다.

또한 P-2J 新銳對潛哨戒機 70台를 包含하는 對潛哨戒機 總 141台와 US-1 救難機 3台 및 HSS-2 等 對潛掃海用 「헬리콥터」 68台인 作戰用航空機 209台 (3次防 約 170台) 로 強化되었다. (36)

航空自衛隊關係 : 4萬 5,492 名의 兵力定員과 地對空 「나이크」 J를 裝備하는 部隊 2群을 增強하고 또한 1群의 編成을 準備하는 同時에 邀擊戰鬪機 F-4EJ 46台를 補強하고 警戒管制能力의 向上을 그 目標로 하며, 併行하여 偵察機 (RF-4E) 14台, 超音速高等練習機 (T-2) 59台, 支援戰鬪機 (FS-T2改) 68台,

註 36) 防衛庁, 前掲書, p. 183.

輸送機 (C - 1) 24 台 計 211 台의 增強을 目標로 推進하였다.

그 結果 1976 年에 이르러 FS - T 2 改 支援戰鬪機 26 台 (計劃分 68 台) 를 除外하고 모두 計劃대로 達成되었다.

이에 따라 4 次防完了 時點에 있어서의 航空戰力은 邀擊戰鬪機 F-4EJ 92 台 F-104 J 174 台, F-86 F 216 台인 計 482 台,

練習機 T-1 57 台, T-2 41 台, T-33 135 台, T-34 32 台인 計

365 台, 輸送機 C-1 21 台, YS-11 13 台인 計 34 台 및 V-107 救難用

「헬리콥터」 22 台로서 總 航空機數는 903 台 (3 次防 約 880 台) 로 增大되었다.⁽³⁷⁾

其他 3 次防에 比하여 高度의 空對艦誘導彈을 包含하는 各種 誘導彈 및 對潛哨戒, 早期警戒機能 向上을 위한 電子機器等의 研究開發에 重點을 두고 推進하였다.

4 次防에 投入된 國防費는 總 5 兆 6,684 億「엔」(3 次防의 約 2.2 倍, 約 189 億「달러」로 年平均 約 38 億「달러」가 投入된 셈이다

특히 1976 年度의 國防費는 1 兆 5,124 億「엔」, 50 億 5,800 萬 「달러」, 韓國 15 億「달러」)에 達하였다. GNP 에 대한 國防費比는 平均 0.86 % (3 次防 0.84 %) 였으며, 一般會計歲出에 대한 對比는 平均 6.5 %의 線 (3 次防 7.3 %) 이었다.

4 次防의 完了年度인 1976 年 6 月에 두번째 防衛白書가 發表되었다. 이것의 第 1 次 防衛白書와 다른 點은 專守防衛概念에 더

註 37) 防衛庁, 上掲書, p.184.

하여 “他國에 武力侵略을 容易케 하지 않는, 有事對処의 態勢를 取하고, 限定的인 小規模의 奇襲攻擊에 의한 武力侵略에 대해서는 이를 排除하는데 있어서 充分한 即應對處力を 保有하지 않으면 안된다.”⁽³⁸⁾ 라고 하여 即應對處力の 保有에 의한 有事對処態勢의 確立에 重點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戰鬪部隊와 後方支援部門間의 均衡이 잡힌 態勢를 갖추는 것을 主眼으로 하는 基盤的 防衛力構想이 提示되었다.

또한 美·日間의 作戰, 情報, 後方支援等 共同軍事行動과 關聯된 協力關係를 強化하기 위하여 美·日安全保障協議委員會의 下部機構로서 美·日防衛協力小委員會(日本側委員: 外務省美國局長, 防衛庁防衛局長, 統合幕僚會議事務局長; 美國側委員: 駐日公使, 駐日美軍參謀長)를 設置·運營하게 됨으로써 美·日間의 軍事協力體制의 一體化가 推進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는 別途로 4次防以後의 防衛力整備의 指針으로서 “防衛計劃의 大綱”이 1976年 10月 29日 國防會議 및 閣議決定에 의해서 策定되었다.

여기에서 비로소 防衛概念이, 이때까지는 包括的으로 되었던 것을 “侵略의 未然防止”라고 하는 側面과 “侵略對処”라고 하는 두가지 側面으로 나누어 새로이 策定되게 된다.

註 38) 防衛庁, “日本の防衛” 1976年 6月, pp. 36-37, p. 44.

即, 侵略의 未然防止를 위하여는 “日本 스스로 適切な 規模의 防衛力을 保有하고 이를 가장 効率的으로 運用할 수 있는 態勢를 構築하고, 同時에 美國과의 安全保障体制의 信賴性 維持 및 円滑한 運用態勢의 整備를 圖謀함으로써 如何한 樣態의 侵略에도 対応할 수 있는 防衛 体制를 構成한다.”⁽³⁹⁾ 는 것이다. 그리고 同時에 核의 威脅에 대해서는 美國의 核抑止力에 依存한다는 것을 大前提로 하고 있다.

한편 侵略對処에 있어서는, “限定的이며 小規模의 侵略에 대해서는 原則적으로 獨力으로 排除하는 것으로 하고, 侵略의 規模, 樣態等에 따라서 獨力으로 排除하는 것이 困難한 경우에도 모든 方法에 의한 強靱한 抵抗을 繼續하고, 美國으로 부터의 協力을 기다려서 이를 排除한다.”⁽⁴⁰⁾ 는 防衛概念을 策定·維持하고 있다.

이 防衛概念에 立脚한 防衛態勢를 ① 警戒를 위한 態勢~ 日本의 領域 및 그 周辺海域의 警戒監視 및 必要한 情報蒐集을 繼續적으로 實施~, ② 間接侵略과 軍事力을 통한 不法行爲等에 對処하는 態勢~ 특히 日本周辺海空域에 있어서 非公公然한 武力行使가 發生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即應하여 行動하고 適切な 措置를 講究~, ③ 直接侵略事態에 對処하는 態勢~ 原則的으

註 39) 朝雲新聞社, 前掲書, p.14.

40) 朝雲新聞社, 上掲書, p.14.

로 限定的이며 小規模侵略에 대해서는 獨力으로 排除~, ④ 指揮通信 및 後方支援의 態勢~指揮通信, 輸送, 救難, 補給, 補修整備 등의 各分野에 있어서의 必要한 機能發揮~, ⑤ 教育訓練의 態勢~周到한 教育訓練의 實施~, ⑥ 災害救援 등의 態勢~必要에 応하여 災害救援 등의 行動實施~⁽⁴¹⁾로 区分하여 이를 施行할 것을 策定·推進하였던 것이다.

바. 4次防後の 防衛力整備計劃과 第3次, 第4次, 第5次防衛白書

4次防後の 防衛概念은 前述한 바의 “防衛計劃의 大綱”에 依拠하여 繼承되고 있다.

第3次(1977年7月), 第4次(1978年7月) 및 第5次(1979年7月)에 걸친 防衛白書의 軍事政策·戰略은 1970年10월에 發表된 第1次防衛白書의 것과 大同小異하다.

다만 軍事力增強計劃은 GNP가 大幅的으로 增大됨에 따라 國防費 역시 크게 增加된 關係로 國內外動向을 勘案, 暫定的인 措置로서 單年度計劃으로 推進되었다.

1977年度와 1978年度 및 1979年度の 主要裝備의 調達 또는 建造計劃은 다음과 같다. ⁽⁴²⁾

註 41) 朝雲新聞社, 上掲書, p. 15.

42) 朝雲新聞社, 上掲書, p. 42, p. 47, p. 49.

区 分	種 類	数 量		
		1977 年度	1978 年度	1979 年度
陸上自衛隊	74式戦車	48台	48台	48台
	73式装甲車	6台	6台	6台
	74式 105 mm 自走榴弾砲	5門	5門	0
	75式 155 mm 自走榴弾砲	10門	15門	26門
	地对空誘導弾「호크」改装用裝備品	教育所要分	1個高射砲隊分	1個高射砲隊分
	連絡偵察機 (LR-1)	1台	2台	3台
	観測「헬리콥터」(OH-6D)	10台	10台	12台
	多用途「헬리콥터」(HU-1H)	3台	2台	3台
	輸送「헬리콥터」(V-107A)	1台	1台	1台
	対戦車「헬리콥터」(AH-1S)	1台	1台	0
海上自衛隊	護衛艦 (2,900 噸級)	1隻	1隻	3隻
	護衛艦 (3,900 噸級)	0	1隻	0
	護衛艦 (1,200 噸級)	1隻	0	0
	護衛艦 (1,400 噸級)	0	0	1隻
	潜水艦 (2,200 噸級)	1隻	1隻	1隻
	掃海艇 (440 噸級)	2隻	2隻	2隻
	敷設艦 (4,500 噸級)	1隻	0	0
	対潜飛行艇 (PS-1)	1台	0	0
	対潜哨戒機 (P-3C)※	0	8台	0
対潜「헬리콥터」(HSS-2A)	4台	4台	8台	

区 分	種 類	数 量		
		1977年度	1978年度	1979年度
航空自衛隊	邀撃戦闘機 (F-4EJ)	12台	0	0
	" (F-15)*	0	23台	
	支援戦闘機 (F-1)	18台	15台	5台
	輸送機 (C-1)	2台	0	1台
	早期警戒機 (E-2C)*	0	0	4台
	高等練習機 (T-2)	0	3台	11台

* P-3C, F-15, E-2C機の導入計劃은 防空邀撃能力 및 对潜哨戒能力의 強化의 一環임.

특히 여기에서 F-15邀撃戦闘機는 1978年以後 100台를 國産 또는 一部輸入에 의하여 配置하도록 計劃되었으며, 海上自衛隊에 潜水艦隊를 新設토록 決定(1979年1月11日, 國防會議)되었다.

그리고 对馬警備隊와 補給本部의 新設도 計劃되고 있다.

1979年3月31日 現在の 自衛隊의 戰力은, 陸上自衛隊에 있어서 戰車 810台(4次防 770台), 裝甲車 590台(4次防 670台), 「로켓트」砲 60門(4次防 無), 作戰用 航空機 306台(4次防 約330台), 地对空誘導彈「호-크」 8群(4次防 8群)으로서 특히 戰車中心의 強化가 이루어졌다. (43)

註 43) 防衛庁, “日本の防衛” 1979年7月, p. 資-30.

海上自衛隊에 있어서는 護衛艦 47隻 9萬9,000톤(4次防 44隻 9萬2,000톤), 潜水艦 13隻 2萬2,000톤(4次防 15隻 2萬2,000톤), 機雷艦艇 40隻 1萬6,000톤(4次防 38隻 1萬5,000톤), 哨戒艦艇 26隻 (驅潜艇 12隻 包含) 6,000톤(4次防 30隻 7,000톤), 輸送艦 6隻 1萬1,000톤(4次防 5隻 9,000톤), 特務艦艇 22隻 3萬1,000톤(4次防 15隻 2萬2,000톤) 總 154隻 18萬5,000톤(4次防 總 481隻 19萬4,000톤)⁽⁴⁴⁾ 으로서 護衛艦과 機雷艦艇의 強化에 重点을 두었으며, P-2J 新銳對潛哨戒機 82台를 包含하는 對潛哨戒機 總 210台(4次防 141台)와 US-1 救難機 3台(4次防과 同一) 및 HSS-2等 對潛掃海用「헬리콥터」 67台(4次防 68台)이 作戰用 航空機 280台(4次防 209台)로 大幅的으로 增強되었다.⁽⁴⁵⁾

이 밖에 P-3C 最新銳對潛哨戒機 43台를 導入中에 있다.⁽⁴⁶⁾

이처럼 特히 對潛哨戒能力의 大幅向上에 置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航空自衛隊에 있어서는 邀擊戰鬥機 F-4EJ 113台(4次防 92台), F-104J 167台(4次防 174台), F-86F 84台(4次防 216台) 및 F-1 國產支援戰鬥機 26台的 새

註 44) 支援船 334隻 2萬7,000톤이 廢船処分되었기 때문이다.

45) 防衛庁, 前掲書, pp. 資-31~資32.

46) IISS, Military Balance 1979-80, p. 67.

그러나 防衛ハンドブック에 의하면 1978年度에 8台的 P-3C를 導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로운 配置 等으로 F-86F와 F-104J의 老朽化對策으로서 F-4EJ 「팬텀」을 增大하는 同時에 F-15를 100台 導入中에 있다. (47) 또한 E-2C 早期警戒機 4台도 아울러 導入中이다. 이 밖에 超音速高等練習機 T-2 56台 (4次防 41台) 및 輸送機 C-1 23台 (4次防 21台)를 保有함으로써 總 航空機數 578台 (4次防 903台)가 되고 있으며, 비록 量的인 面에서는 325台가 減少되었지만 質的인 面에서는 增強되었고 또 大幅的인 增強이 促進되고 있는 것이다.

國防費의 投入面에 있어서는 1977年度 60億 9,000萬「달러」(世界第9位), 1978年度 85億 6,700萬「달러」(世界第9位), 1979年度 100億 8,300萬「달러」(世界第8位) (48)로서 비록 GNP에 對比하여 年平均 0.9%에 不過한 國防費를 充當하고 있지만, 그 絶對額數는 急速히 增加되고 있다. 또한 一般會計 歲出에 對比 年平均 5.6%線에 不過하며, 國防費額數와는 正反對로 世界各국가운데 下位「그룹」의 位置를 繼續 維持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各年度의 國防費는 GNP의 $\frac{1}{100}$ 에 相當하는 額數를 當分間 超過하지 않을 것을 目標로 하여 이를 行한다고 하는 1976年 11月의 閣議決定에 따라 繼續 1%未滿으로 策定하고 있으나, 當分間이라고 한것처럼 必要에 따라 向後 再檢討의 可能性이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49)

註 47) IISS, 上揭書, p. 67.

48) IISS, 上揭書, p. 95.

49) 朝雲新聞社, 前揭書, p. 344.

II. 80年代의 日本의 防衛概念과 中·長期

軍事政策 및 軍事力 增強 展望

1. 基本前提

1976年 10月에 策定한 “防衛計劃”의 大綱에 의하여 日本의 防衛概念은 “侵略의 未然防止”와 “侵略對処”라고 하는 두가지 側面에서 摸索되고 있다. 이에 따라 軍事政策은 “美國의 戰略核武器에의 依存”, “專守防衛”, “限定的 小規模奇襲侵略에 대하여 即應하는 對処能力”, “非核3原則”, “海外派兵의 禁止”, “徵兵制의 不實施”, “武器輸出3原則”, “軍事戰略·戰術의 研究推進”을 그 骨子로 하여 追求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立脚하여 軍事戰略은 다음과 같이 摸索되고 있다. 卽, 첫째는 專守防衛戰略이다. 相對方의 基地를 攻擧내지는 侵入하는 일이 없이 全的으로 日本國土와 그 周邊에 있어서의 防衛에 만 透徹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相對方으로 부터의 侵略이 豫想된다 하더라도 相對國에 대한 先制攻擧를 할 수 없고 반듯이 侵略者의 攻擧에 대해서 그때마다 이를 防禦하며 排除한다고 하는 戰略的 守勢의 戰略概念인 것이다. 따라서 先制攻擧이나 1950年代 後半에 있어서의 見解처럼 誘導彈等에 의한 攻擧가 發生하였을 경우, 그 誘導彈等의 基地에 攻擧를 加한다는 것이 아니라, ① 攻擧의 意志를 가진 艦隊가 日本列島에 向했다고 하는 것이 確實視된 時

点, ② 攻撃隊가 母艦을 發進하고 公海 및 公空上에 있는 時点,
③ 來襲機가 領域에 들어 온 時点에 있어서의 武力攻撃에 대해서
는 戰術的 攻勢를 取하여 이를 排除할 수 있다⁽⁵⁰⁾고 하는 軍
事戰略이다.

이에 따라 (1) 他国国土에 대하여 潰滅的 破壞를 위해서만 使用
되는 武器, 例를 들면 ICBM, IRBM와 같은 戰略「미사일」, B-52
와 같은 戰略爆撃機, 攻撃航母等の 戰略武器는 憲法上의 制約으로
保有할 수는 없으나, 对潜水艦用航母, 巡航「미사일」, 中性子爆彈等은
그것이 곧 違憲이라고 할 수 없고⁽⁵¹⁾ 他国에 侵略的 威脅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小型의 核武器는 保有할 수는 있지만, 非核3
原則이 있는 以上 保有하지 않는 方針⁽⁵²⁾이라고 하면서 이들
戰術的 核攻撃武器의 保有에 대한 柔軟性을 留保시키고 있는 것이
다.

또한 이 戰略과 關聯하여, ① 侵略者의 意圖라든가 動靜을 조금
이라도 빨리 살살이 알아서 이에 対応하는 態勢를 取하는 措置로
서, 警戒, 監視, 偵察 等の 手段으로 自動防空警戒管制組織의 強化,
早期警戒機 (E-2C)의 配備, 偵察機의 充實化를 期하고, ② 最新鋭

註 50) 朝雲新聞社, 上掲書, P.339.

51) 1978年 第84次通常国会에서 行한 政府側 見解.

52) 防衛庁, “日本の防衛” 1970年10月, 1976年6月, 1977年
7月, 1978年7月, 1979年7月 参照.

对潜哨戒機(P-3C)의 配備와 对潛用護衛艦의 強化를 圖謀하며,

③ 短時間內에 侵攻機를 邀撃할 수 있는 高性能邀撃戰鬪機(F-15)의 配備 및 地对空誘導彈의 充實化를 繼續 追求해 왔던 것이다. 이와 併行하여 後方支援態勢의 強化를 重要視 하고 特히 民防衛体制의 整備에 관하여는 重要な 課題로서 研究檢討되고 있다.

(2) 海外派兵에 대한 柔軟性이 留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武力行使의 目的으로 武装한 部隊를 他國의 領域에 派遣하는 所謂 海外派兵은 憲法上 認定되고 있지 않다” (53) 라고 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武力行使를 目的으로” 라고 明示한 데에는 例를들면 「유엔」 警察軍으로서의 海外派兵은 可能한 것으로 示唆하고 있다는 論理가 成立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池田首相當時에 밝혀진 것이지만, “「유엔」 警察軍이 그 目的과 任務 그리고 機能 및 組織에 있어서, 純全히 警察目的과 世界治安維持를 위하여 派兵되는 것이라면 憲法上 考慮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54)는 論理가 海外派兵原則으로서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3) 集團的 自衛權의 否認이 內容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엔」 憲章第 51 條에 있어서 國際적으로는 認定되고 있는 集團的 自衛權에 대해서도 憲法은 設使 日本과 密接한 關係

註 53) 防衛庁, “日本の防衛” 1979年 7月, P. 2-4.

54) 朝雲新聞社, 前掲書, P. 330.

에 있는 外國의 國土, 國民에 대한 侵略에 對處하는 것 조차도 容認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行使는, 憲法上 禁止되고 있다고 하는 見解를 取하고 있다” (55) 라고 함으로써, 日本의 施政下에 있는 領域(美·日安保條約 第5條) 以外의 地域, 그것이 日本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美國의 國土와 國民에 대한 侵略에 對處하는 行動조차도 否認하고, 이에 대한 軍事的 不介入態度를 明白히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限定的 小規模奇襲侵略에 대한 即應對處戰略이다. 即, 地域과 目的, 手段(通常武器), 및 期間等에 있어서 限定되고, 뿐만아니라 大規模의 攻擊規模가 아닌 小規模의 奇襲攻擊에 의한 侵略에 스스로의 軍事力으로 이를 排除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만 國際情勢와 日本周邊의 國際政治構造의 變化에 의하여 大規模의 侵略이 生길 可能性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對應하는 防衛概念과 政策 및 軍事戰略 그리고 새로운 軍事力態勢로 移行한다는 것을 明白히 하고 있다. (56)

셋째는 美國과의 軍事協力體制의 効率的 運用을 통한 侵略의 未然防止態勢의 確立과 共同對處行動의 確保이다. 이것은 1977年初부터 始作된 美·日防衛協力小委員會의 作戰, 情報, 後方支援의 三部

註 55) 防衛庁, 前掲書, P. 2-4

56) 防衛庁, 上掲書, PP. 2-12 ~ 2-13 參照

회에 의해서 作成되고, 美·日安保協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서

1978年 11月 28日 國防會議과 閣議의 決定을 본 “美·日防衛協力을 위한 指針”에 따라 그 方向이 뚜렷해 졌다. (57)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即, (1) 侵略을 未然에 防止하는 態勢로서는, ① 日本은 그 防衛政策으로서 自衛를 위하여 必要한 範圍內에 있어서 適切한 規模의 防衛力을 保有하며, 同時에 이의 가장 効率的인 運用을 確保하기 위한 態勢를 整備·維持하고 또한 地位協定에 따라서 美軍에 의한 在日本施設 및 區域의 安定的이며 効率的인 使用을 確保한다. 그리고 美国은 核抑止力을 保持함과 同時에 即応部隊를 前方展開하며, 또한 來援할 수 있는 其他의 兵力을 保持한다는 것이며, ② 美·日兩國은 日本에 대한 武力攻擄이 있는 경우에, 共同對処行動을 円滑히 實施할 수 있도록 作戰, 情報, 後方支援 등의 分野에 있어서 自衛隊와 美軍間의 協力態勢의 整備에 努力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㉑ 共同作戰計劃의 研究施行, 必要한 共同演習과 共同訓練의 適時實施, 作戰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共通의 實施要領(作戰, 情報, 後方支援包含)에 관한 研究 및 準備, 通信電子活動에 관한 相互必要한 事項의 既定化 ㉒ 交換하는 情報의 種類 및 交換任務를 担当할 自衛隊와 美軍部隊의 既定化, 相互間의 通信連絡體系 등의 整備

註 57) 朝日新聞, 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全文), 1978年 11月 29日 字(4).

에 의한 緊密한 情報協力態勢의 充實化 ㉞ 補給, 輸送, 整備, 施設等 各機能에 대한 緊密한 相互調整 내지는 研究의 施行, 豫想되는 不足補給品目, 數量, 補完의 優先順位, 緊急取得要領 等に 관한 調整 作業의 實施, 自衛隊의 基地 및 美軍의 施設, 区域의 經濟的이며 効率的 利用形態에 관한 研究推進을 하도록 하고 있다.

(2) 日本에 대한 武力攻撃에 있어서의 対処行動으로서는 “日本에 대한 武力攻撃이 있을 憂慮가 있는 경우”와 “日本에 대한 武力攻撃이 생긴 경우”의 둘로 想定하여 規定하고 있다. ㉞ 日本에 대한 武力攻撃이 있을 憂慮가 있는 경우: ㉞ 情勢의 變化에 応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는 自衛隊와 美軍間의 調整機關의 開設을 包含한 잘, 整備된 共同対処行動의 確保를 위한 必要한 作業實施 ㉞ 共通의 基準~情報活動, 部隊의 行動準備, 移動, 後方支援, 其他 作戰準備에 관계되는 事項과 관련된 部隊의 警戒監視態勢의 強化에서 部隊의, 戰鬥準備態勢의 最大限의 強化에 이르기 各자의 準備段階를 区分하여 提示~의 既定化 ㉞ 美·日兩國政府의 合意에 의해서 選択된 準備段階에 따라 作戰準備를 實施하도록 되어 있다.

㉞ 日本에 대한 武力攻撃이 생긴 경우: ㉞ 日本은 原則으로서 限定的이며 小規模인 侵略을 獨力으로 排除한다. 侵略의 規模, 樣態 등에 의하여 獨力으로 排除하는 것이 困難한 경우에는, 美國의 協力を 기다려서 이를 排除한다. ㉞ 自衛隊 및 美軍이 日本防衛를 위한 作戰을 共同으로 實施할 경우에는, 雙方은 相互 緊密한 調整을 꾀함으로써 各其의 防衛力을 適時 그리고 效果的으로 運用한다

는 것이다. ③ 日本에 대한 武力攻撃이 생긴 경우에 있어서의 作戰構想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고 있다. 即, 自衛隊는 주로 日本의 領域 및 그 周邇海空域에 있어서 防務作戰을 遂行하고, 美軍은 自衛隊가 遂行하는 作戰을 支援한다. 美軍은 또한 自衛隊의 能力이 미치지 않는 機能을 補完하기 위한 作戰을 實施한다는 것이다.

㉑ 陸上作戰: 陸上自衛隊 및 美陸上部隊는 日本防衛를 위한 陸上作戰을 共同으로 實施한다. 陸上自衛隊는 沮止, 持久 및 反擊을 위한 作戰을 實施하고, 美陸上部隊는 必要에 應해서 來援하여 反擊을 위한 作戰을 中心으로 陸上自衛隊와 共同으로 作戰을 實施한다는 것이다.

㉒ 海上作戰: 海上自衛隊 및 美海軍은 周邇海域의 防衛를 위한 海上作戰 및 海上交通의 保護를 위한 海上作戰을 共同으로 實施한다. 海上自衛隊는 日本의 重要한 港灣 및 海峽의 防衛를 위한 作戰과 周邇海域에 있어서의 對潛作戰, 船舶의 保護를 위한 作戰, 其他의 作戰을 主体가 되어 實施하고, 美海軍部隊는 海上自衛隊가 遂行하는 作戰을 支援하며, 또한 機動打擊力을 保有하는 任務部隊의 使用을 隨伴한 作戰을 包含하여 侵攻兵力을 擊退하기 위한 作戰을 實施한다는 것이다.

㉓ 航空作戰: 航空自衛隊 및 美空軍은 日本防衛를 위한 航空作戰을 共同으로 實施한다. 航空自衛隊는 防空, 着上陸侵攻沮止, 對地支援, 航空偵察, 航空輸送 등의 航空作戰을 實施하고, 美空軍部隊는 航空自衛隊가 遂行하는 作戰을 支援하며, 또한 航空打擊力을 保有하는

航空部隊의 使用을 隨伴하는 作戰을 包含하여 侵攻兵力을 擊退하기 위한 作戰을 實施한다는 것이다.

② 其他 指揮 및 調整, 調整機關, 情報活動, 後方支援活動~補給, 輸送(美國으로부터 日本으로의 補給品の 航空輸送 및 海上輸送을 包含하는 輸送活動을 緊密히 協力하여 實施), 整備~ 施設에 관한 協力이 規定되었다. 여기에서 特히 施設에 관하여, 美軍은 必要한 때에는 美·日安保條約 및 그 關聯協定에 따라서 새로운 施設과 區域을 提供받고, 또한 効果的이며 經濟的인 使用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自衛隊의 基地와 美軍의 施設·區域에 대한 共同使用을 考慮하는 것이 必要한 경우에는, 自衛隊 및 美軍은 同條約과 關係協定에 따라서 共同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3) 日本以外の 極東에 있어서의 事態로 日本의 安全에 重要な 影響을 미치는 경우의 美·日間의 協力은, ① 美·日兩國政府는 情勢의 變化에 應하여 隨時協議하고 ② 日本이 美軍에 대하여 行하는 便宜提供의 樣態는 美·日安保條約, 其他 美·日間의 關係協定 및 日本의 關係法令에 의하여 規律되며 ③ 美·日兩國政府는 上記 法的테두리의 範圍內에서 美軍에 대하여 行하는 便宜提供의 樣態에 관하여 미리부터 相互間에 研究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美軍에 의한 自衛隊基地의 共同使用 및 其他 便宜供與의 樣態에 관한 研究가 包含된다는 것이다.

내재는 威脅의 對象의 現實化를 통한 軍事戰略·戰術의 補完推進이다. 防衛白晝의 回數가 거듭될수록 蘇聯의 軍事能力에 대한 增

強이 強調되었지만, 그것이 日本에 대한 軍事的 威脅이 된다고는 明示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9年度의 防衛白書는 “이와 같이 增強되어 가고 있는 極東蘇聯軍은 西太平洋에 있어서의 美·蘇의 軍事力均衡에 影響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日本의 防衛에 대해서도 注目해야 할 軍事能力을 갖추는데 이르고 있다.” (58) 라고指摘하고 또한 “如何튼간에 이러한 地域~國後(「크나시리」)島와 択捉(「에포로프」)島~에 (蘇聯)軍事力이 存在한다는 것은 日本의 防衛에 대해서 重要な 関心事項이기 때문에 今後에도 이 動向에 관하여는 注目해 나갈 必要가 있다” (59) 라고 함으로써 極東蘇聯軍을 軍事的 威脅의 對象으로서 現實化했다고 하는 것이다. 卽 다시말해서 1978年 7月까지는 蘇聯을 假想敵으로 想定하면서도 이를 明確히 하지 않았던 從來의 態度를 一變하여, 假想敵으로서의 取扱態度를 分明히 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1963年 非常事態下에 있어서의 軍事行動上の 問題點에 대하여 檢討되었던 “三矢研究” 以來의 懸案問題로서, 万若 奇襲攻撃을 받았을 경우, 首相이 防衛出動命令을 내릴 때까지, 그 동안 奇襲攻撃을 당한 現地部隊는 어떻게 이에 対処하여야 하는가 하는 奇襲對処問題와 또한 防衛出動命令을 내린

註 58) 防衛庁, 前掲書, P. 1-36.

59) 防衛庁, 上掲書, P. 1-37 參照.

後 首相은 軍事行動을 有効하게 遂行하기 위한 措置로서 어떠한 方法으로 戒嚴令을 宣布해야 하고, 兵力補充方法을 어떻게 하여야 하며, 軍事機密을 어떻게 保護・維持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有事法制 問題를 配慮하여, 意識적으로 蘇聯極東軍으로부터 오는 威脅을 明確히 함으로써 이를 對象으로 하는 向後의 軍事戰略・戰術의 補完을 推進해 나갈 意圖로 評價된다.

이에 대하여는 “有事時의 陸・海・空自衛隊의 運用 및 運用에 關하여 必要하게 되는 各種施策~奇襲對処, 有事法制 등이 包含될 것으로 본다~의 檢討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 日本에 대한 各種 武力攻擊의 樣態, 例컨대 着上陸攻擊이 主体가 되는 경우, 海上交通의 차단이 主体가 되는 경우, 航空攻擊이 主体가 되는 경우 등 모든 樣態를 考慮하고, 이에 対応하는 自衛隊의 防衛準備, 指揮調整, 對処의 要領 등 自衛隊의 運用樣態에 關하여 特히 陸・海・空自衛隊의 統合的인 運用을 重視하면서 推進하는 同時에 이와 關하여 必要하게 될 各種 防衛上의 施策에 대해서도 併行하여 推進한다”(60) 라고 밝히고 있는 1979年度 防衛白書가 뒷받침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80年代의 日本의 防衛概念과 中・長期軍事政策 戰略 및 軍事力 增強에 影響을 미치는 对内外的 与件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註 60) 防衛庁, 上掲書, PP.3-48 ~ 3-49.

2. 对内外的 与件

(1) 对内的 与件

(가) 政治的 侧面

첫째, 日本国民들의 防衛意識은 自民党政權이 持續된 가운데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自衛隊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이 增大되고 있다. 即, 「상계야」新聞이 1977年 1월에 實施한 防衛意識 調査에 의하면, “日本이 攻擧를 받았을 경우, 나라를 지킬 必要가 있는가” 하는 設問에 대하여 “獨立國인 以上 當然히 지킬 必要가 있다”고 한 것이 54.0% (61)에 達했으며, 비슷한 時期에 読売新聞이 防衛問題에 대한 関心度 調査를 實施한 結果, 関心を 表明한 層이 56.8%였고, 1969年부터 內閣弘報室이 實施한 調査結果에 의하면 “日本이 侵略된 경우, 自衛隊에 參加해서 싸운다, 또는 어떠한 方法으로라도 自衛隊를 支援한다”고 한 層이 1969年度 40%, 1975年度 38%, 1978年度 47%로 上昇되고 있다. 또한,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이 強하다”고 한 層이 1978年度에 54%였다. (62)

註 61) 週刊サンケイ, “日本人의 防衛意識 調査”, 1977年 2月 21日 p. 30.

62) 防衛庁, 前掲書, P. 3-115, P. 3-118. 朝雲新聞社, 前掲書, P. 320.

自衛隊의 必要性에 대한 認識度는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上昇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63)

年 度	贊 成 (%)	反 對 (%)	DK
1 9 5 6	58	18	24
1 9 5 9	65	11	24
1 9 6 3	76	6	18
1 9 6 5	82	5	13
1 9 6 7	77	6	17
1 9 6 9	75	10	15
1 9 7 2	73	12	15
1 9 7 5	79	8	13
1 9 7 8	86	5	9

即, 自衛隊가 創設된 2年後인 1956년에는 贊成者가 58%였던 것이 1978년에는 86%로 增大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今後 어떠한 面에 注力하면 좋은가”라는 設問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反應의 變化를 보이고 있다. (64)

註 63) 防衛庁, 上掲書, P.3-105. 朝雲新聞社, 上掲書, P.318.

64) 防衛庁, 上掲書, P.3-110. 朝雲新聞社, 上掲書, P.319.

数字：%

年 度	安全確保	災害派遣	治安維持	民生協力	其 他	DK
1965	15	40	16	11	1	12
1969	29	24	19	5	0	13
1972	24	38	16	2	1	14
1975	30	34	19	5	1	11
1978	38	33	14	4	0	11

即, 1965年度에 있어서는 災害派遣(40%)이 国家的 安全確保(15%)보다도 훨씬 上廻했던 것이, 1978年度에는 国家的 安全確保에 注力해야 한다는 層이 38%, 災害派遣에 注力해야 한다는 層이 33%가 됨으로써 逆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한편 軍事力이 增強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表에서 보는바와 같이 相當한 抵抗이 있지만, “增強하는 편이 좋다”고 하는 層이 漸增勢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모르겠다”고 하는 層이 如前히 強勢를 보이고 있는데, (65) 이 趨勢는 日本에 대한 蘇聯의 威脅度가 增大됨에 따라 增強支持率도 增大될 것이라는 豫測을 可能케 하는 것이다.

註 65) 防衛庁, 上掲書, p. 3-112. 朝雲新聞社, 上掲書, p. 310.

数字：%

項目 \ 年度	陸上自衛隊			海上自衛隊			航空自衛隊		
	1972	1975	1978	1972	1975	1978	1972	1975	1978
增強하는 편이 좋다	11	17	22	15	18	23	13	15	23
지금 程度가 좋다	51	54	53	46	51	49	47	53	48
지금보다 적어도 좋다	18	10	6	17	10	6	19	11	7
모르겠다	20	19	19	22	21	22	21	21	22

이와 관련하여 國防費를 增額하는 편이 좋다고 하는 層도 漸增되고 있다는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66)

数字：%

項目 \ 年度	1972	1975	1978
增額하는 편이 좋다	10	13	20
지금 程度가 좋다	42	48	48
지금보다 적어도 좋다	23	15	10
모르겠다	25	24	22

註 66) 防衛庁, 上掲書, P.3-113. 朝雲新聞社, 上掲書, P.311.

即, 위의 表에서 보는 것처럼 國防費 增額贊成層이 1972年度의 10%에서 1978年度는 20%로 上昇되고 있다는 것이다.

反面에 核武装에 대한 拒否反應은 더 強力해 지고 있다. 即, 読売新聞이 1977年 2월에 調査한 바에 의하면 日本이 核武器를 갖는 것을 바라지 않는 層이 73.6%(1969年度 71.8%), 바라지는 層이 10.3%(1969年度 16.1%), 모른다는 層이 16.1%(1969年度 12.1%)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는, 國防問題에 대하여 消極的인 態度를 가졌던 民社黨과 自衛隊를 否認했던 公明黨의 態度變化이다. 即, 民社黨은 第34次 總選公約에서 “獨立國으로서 他國으로부터 受인여기지 않도록 必要한 防衛力을 整備하고, 美·日安保條約으로 補充한다. 國會에 防衛委員會를 만들어서 國民的 合意를 形成한다”(67)고 하여 積極的인 態度를 取하고 있다. 한편 公明黨의 竹入委員長은 1977年 및 1978年 1月の 黨大會에서 “自衛隊의 存在는 既定事實化되고 있다. 急迫不正의 侵害의 排除를 위하여 領域保全의 能力을 必要로 하는 것이 國民의 潜在的 合意이다.”라고 말함으로써 從來의 遠慮團體인 自衛隊를 解体하고 最小限의 国土警備隊를 두어야 한다는 態度를 바꾸고 現實路線으로 傾斜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美國과의 安保體制의 堅持에 一貫하고, 그 밖의 他國과의

註 67) 朝日新聞, 1979年 9月 18日 字(4).

直接的인 軍事協力体制의 形成에는 反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与党인 自民党和 準与党인 民社党 및 新自由俱의 防衛政策에서 明白히 밝히고 있는 바다. 輿論調査에 있어서도 日本의 防衛体制에 대하여 “現狀대로 美·日安保体制과 自衛隊로 日本의 安全을 지킨다”고 한 層이 1978年度 61%(1972年度 41%, 1975年度 54%)로 나타나고 있으며, (68) 1979年度 防衛白書에서도 이 點을 明確히 하고 있다. (69)

그리고 “武力行使의 目的으로 武装한 部隊를 他國의 領土·領海·領空에 派遣하는 海外派兵은 憲法上 許容되지 않는 것으로 解釈하고 있다” (70)는 態度를 堅持하고 있다.

네제는 反蘇 및 對蘇警戒意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読売新聞이 實施한 輿論調査(1977年 2月)에 의하면 日本의 安全에 대해서 威脅이 되는 國家를 蘇聯(52.7%), 美国(10.7%), 中国(10.5%), 北韓(8.6%), 韓國(4.8%), 其他(0.7%), 그러한 나라는 없다(10.4%), 모르겠다(25.0%)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即, 國民의 半數以上이 蘇聯에 對한 威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 對蘇威脅感은 1969年度 調査結果보다도 2倍以上으로 急昇되었다.

註 68) 防衛庁, 前掲書, P.3-114. 朝雲新聞社, 前掲書, P.317.

69) 防衛庁, 上掲書, P.2-4 參照.

70) 朝雲新聞社, 前掲書, P.327.

그리고 今年 10月7日에 實施된 衆議院總選舉公約에 社会党과 共産党 그리고 社会民主連合의 革新政당이 처음으로 对蘇威脅論에 대한 反对意思를 表明하고 있는데, 即, 社会党은 “蘇聯의 威脅은 日本의 軍事力增強의 口実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共産党은 “蘇聯威脅論은 美国을 元凶으로 하는 美·蘇軍拮의 惡循環의 一面을 意圖的으로 誇張하고, 日·美軍事同盟強化의 口実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社会民主連合은 “蘇聯을 假想敵國으로 하는 最近의 風潮는 危險하며, 非現實的이다” (71)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逆說的으로 말해서 革新政党的 神經을 거슬릴 만큼 对蘇警戒意識이 높아지고 있음을 立証해 주는 것이다.

既述한 바와 같이 今年度の 防衛白書는 蘇聯極東軍의 軍事力增強에 대하여 特히 強調하고 이를 日本에 대한 軍事的 威脅으로 看做하고 있다. 山下防衛厅长官은 防衛厅长官으로서 처음으로 日本의 假想敵國으로 蘇聯을 指摘하였다.

特히 北海道의 漁民과 東海沿岸의 漁民들은 蘇聯이 200海里經濟水域을 宣布한 後, 北方領土問題와 결들여서 反蘇感情이 매우 높으며, 戰前世代인 40代後半以上の 大部分의 国民들은 日·蘇不可侵條約의 有効期間이 1年余남았는데도 一方的으로 破棄하고 对日戰에 뛰어들어 背信行爲와 滿洲와 北韓地域에서 行한 掠奪, 虐殺 등의 蛮行

註 71) 朝日新聞, 1979年 9月 18日字 (4).

그리고 「시베리아」抑留生活의 쓰라린 體驗을 생생하게 記憶을 하고 있다.

(나) 經濟的 側面

첫째 日本은 軍事力增強을 위한 經濟力을 保有하고 있다는 것이다. 即, 日本은 GNP에 있어서 1977年度 実績 191兆 4,000億「엔」(約 7,975「달러」)을 示顯함으로써 蘇聯의 6,880億「달러」를 능가하여 世界第2位의 經濟國으로 登場하였다. 1979年 1月 24日, 日本大藏省이 發表한 바에 의하면, 1978年度の GNP 展望을 211兆 8,000億「엔」(約 1兆 295億「달러」)로, 1979年度の 展望을 232兆「엔」(約 11兆 741億「달러」)로 判斷하고 있다. 現在와 같이 年平均 實質成長率 GNP 6%로 計算할 경우, 1985年度 GNP의 推定額은 約 329兆億「엔」이 될 것으로 評價되는데, 이를 1「달러」당 200「엔」으로 換算할 때 約 1兆 6,450億「달러」의 規模가 되는 셈이다.

둘째는 政府豫算에 있어서 國防費가 占하는 比率이 적다고 하는 것이다. 即, 1979年度는 5.43%에 不過하며, 特히 社會保障費는 22%에 達하고 있다.

셋째는 資源多消費型 經濟構造에 의한 世界第1의 資源輸入國이라고 하는 것이다. 1979年度の 資源(石油, 銅, 鉛, 亞鉛, 「알루미늄」 「니켈」, 粗鋼)輸入量이 414億「달러」~美國은 1975年度에 312億「달러」~에 達하였다. 特히 石油 99.7%, 鉄鉱石 99.1%, 「알루미늄」 100%等 主要戰略資源을 海外에 依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우기 毎年 增加되는 中東의 石油輸入 (1978年度 展望
2億 7,122万 6,000 Kℓ , 1979年度 計劃 2億 9,263万 5,000 Kℓ ~
前年度比 7.9%增~) 을 위한 海上交通路의 安全確保에 대한 関心
이 漸次 높아지고 있다.

네제는 工業生産에 占하는 防衛生産의 位置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이다. 1976年度 統計에 의하면, 航空機 88.63%, 武器·彈藥
99.85%에 達하고 있다. 한편 艦艇, 車輛, 電氣通信機器를 國産
化하고 있는 日本은 工業生産에 있어서 艦艇 1.66%, 車輛
0.08%, 電氣通信機器 0.62%를 보임으로써 (72) 이를 防産部門이
工業生産에 伸張될 可能性을 充分히 가지고 있다.

(대) 軍事的 側面.

첫째, 軍事威脅에 대한 対処能力이 未洽하다는 것이다. 即,
陸上自衛隊는 18万名의 定員에 대하여 15万 3,252名 (1978年
10月現在) 이며 그 充足率은 85.1%이다. 그리고 彈藥의 備蓄
量은 7万「톤」이며, 邀擊戰鬥機의 空對空「미사일」도 1台당 4發
에 不過하다. 또한 兵力에 縱深性이 없다. 即, 據備自衛官이

1978年 10月現在 陸上自衛隊가 3万 8,701名 (定員 4万名), 海上自
衛隊가 583名 (定員 600名), 航空自衛隊가 全無한 計 3万 9,284
名 (定員 4万 600名) ~ 1979年 1月 11日 國防會議決定에 依拠 陸

註 72) 防衛庁, 前掲書, PP. 資 - 34 ~ 資 - 35 . 朝雲新聞社, 前掲書,
PP. 163-164.

上自衛隊의 豫備自衛官의 定員이 1,000名 增加되었음~.)에 不過하다.

또한 飛行場, 「레이다」 基地, 兵站基地, 通信施設等은 大規模의 奇襲攻擊을 감당할 수 있는 狀態에 놓여있지 않다. 그리고 海上自衛隊의 艦艇은 對潛作戰을 主目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對空, 對艦能力이 極히 微弱하다. 同時에 沿岸防衛能力도 弱하다고 하는 것이 指摘되고 있다.(73)

둘에는 美國, 蘇聯, 中共 및 韓半島의 隣接關心地域에 대한 軍事情報蒐集에 대한 關心이 增大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1978年度 防衛白書부터 強調되고 있다. 20個國에 27名의 武官을 派遣하고 있는 가운데 美國 5名, 蘇聯 3名, 韓國 2名, 中共 1名 및 其他 各國에 1名씩 만을 派遣(74) 하고 있는 것으로도 그 關心度를 測定할 수 있다.

세째는 裝備購入費의 負擔을 輕減시키기 위하여 武器輸出에 대한 關心이 增大되고 있다는 것이다. 國防費가운데 裝備品等 購入費가 占하는 比率이 漸次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1972年度 24.9% 1975年度 19.0%, 1978年度 17.1%, 1979年度 18.7%~ F-2C, F-15, P-3C等이 매우 高價이기 때문에 그 負擔은 크게 줄지는

註73) 坂中友久, 中央公論, “日本防衛政策の欠陥を衝く”, 1978年10月号, PP.66-88 参照.

74) 朝雲新聞社, 前掲書, P.351.

않을 것임으로, 이의 補充을 위하여 武器輸出에 대한 関心が 增大되고 있다. 特히 財界에서는 武器輸出規制를 緩和시키려는 움직임을 強하게 나타나고 있다.

네째는 韓半島情勢에 대한 関心增大이다. 1970年度の 第1次防衛白書부터 第5次防衛白書에 이르기까지 評價된 韓半島情勢와 重要 関心事項에 대한 推移는 다음 表에서 보는바와 같다.

年度 項目	1970	1976	1977	1978	1979
韓 半 島 情 勢 評 價	○ 不安定한 상태의 繼 統	● 世界에서도 가장 軍事 的 緊張이 存在하는 地域의 하 나 ○ 韓半島의 安定을 위 해서는 駐 韓美軍의 駐屯과 政 治的 成熟 必要	○ 世界에서 가장 軍事 的 對立과 緊張이 甚 한 地域의 하나 ○ 韓半島의 平和·安定 維持는 日 本の 安全 維持에 있 어 重要한 關係	○ 世界에서 가장 軍事 的 對立과 緊張이 甚 한 地域의 하나 ○ 韓半島의 平和·安定 維持는 日 本の 安全 에 重要한 關係가 있 을 뿐만 아니라	○ 世界에서 가장 軍事 的 對立과 緊張이 甚 한 地域의 하나 ○ 韓半島의 平和·安定 維持는 日 本の 安全 에 重要한 關係가 있 을 뿐만 아니라

年度 項目	1970	1976	1977	1978	1979
韓 半 島 情 勢 評 價				東아시아 全域의 平 和・安定에 도 重要한 要素	東아시아 全域의 平 和・安定에 도 重要한 要素 ○ 駐韓美地上 軍 撤収의 再檢討 및 撤軍時 充 分한 補完 措置로 韓 半島의 平 和・安定의 維持・確保 가 凶謀됨 은 日本의 國益에 一 致

即, 1979年度에 이르러서는 ① 韓半島는 世界에서 가장 軍事的
對立과 緊張이 甚한 地域의 하나이며, ② 韓半島의 平和・安定維持

는 日~~의~~ 安全에 重要한 關係가 있을 뿐만 아니라 東「아시아」
 全域의 平和・安定에도 重要한 要素라고 하고, ③ 駐韓美地上軍撤収
 의 再檢討 및 撤軍時 充分한 補完措置로 韓半島의 平和・安定의
 維持・確保가 凶謀됨은 日本의 國益에 一致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戰後 最初로 山下防衛庁長官이 來韓하였고 前防衛庁次官
 (久保卓也)이 訪韓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政府의 評價와는 달리 一般國民들은 韓半島의 危
 機와 관련된 危機 認識이 아직도 不足하다. 即, 「상계이」新聞
 이 1977年 1月初에 實施한 日本人의 防衛意識調査 가운데, “駐
 韓美軍이 撤収하면 日本이 侵略을 받을 危險性”에 있어서 “危險
 性이 增加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한 層(25.1%)보다도 “蘇聯,
 中共, 北韓과 日本과의 關係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危險은 없다”
 라고 한 層이 더 많은 39.2%에 達하고 있다는 것이다.

(數字:%)

(支持政黨別)	自民	社会	公明	民社	共産	新自 由俱	支持 无黨	平均
危險性이 增加된다고 생각 한다.	31.7	19.2	23.1	46.0	14.0	13.1	17.1	25.1
韓國이 危險해져도 問題없 다.	19.3	15.2	28.8	15.9	9.3	29.5	20.0	19.3
蘇聯, 中共, 北韓과의 關係 가 나쁘지 않음으로 危險無	32.9	45.6	32.7	30.2	62.8	50.8	42.4	39.2
모르겠다. 無回答	16.1	20.0	15.4	7.9	14.0	6.6	16.7	16.3

註 75) 週刊サンケイ, 前掲書, P.79.

특히 “韓國이 危險해져도 問題없다”고 한 層이 19.3%나 된다고 하는 것은 注目하여야 할 일이다. 또한 蘇聯, 中共, 北韓과의 關係가 나쁘지 않기때문에 危險은 없다고 한 層 가운데 共産党支持者 (이 中 62.8%), 新自由俱支持者 (이 中 50.8%), 社会党支持者 (이 中 45.6%)는 不問한다 하더라도 自民党和 民社党支持者中에서도 各各 32.9%와 30.2%를 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設使 韓半島가 赤化되더라도 日本의 安全과는 無關하다고 하는 思考方式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 點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섯째는 軍幹部의 世代交替의 進行이다. 即, 停年이 2佐 (中領) 以下 50歲, 1佐 (大領) 53歲, 將補 (少將) 55歲, 將 (中將 및 大將) 58歲로 되어 있어서, 戰前의 陸士 및 海士出身은 將補級에서 이미 退役했거나 그 直前に 있다. 이에 따라 戰後派인 防衛大学校 第1期生~昨年 27期를 輩出~들이 將補 (少將)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으로 2~3年이면 世代交替가 거의 完全히 이루어질 것이며, 새로운 “대”派的 變化가 일어날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다.

(2) 对外的 与件

美国은 지난 9月 17日 美上院外交委員会 「처치」報告書에서도 “美国의 对「아시아」政策을 成功시키기 위해서는 強力한 美

日關係의 維持가 重要하다”(76) 라고 強調하고 있는 것처럼, 美·日安保體制의 維持와 強力한 緊密化를 推進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이 核武裝을 하거나 本格的인 軍備擴張에는 反對하고 限定的이며, 漸進的인 軍事力增強과 軍事的 寄与를 增大할 것을 期待하고 있는 것이다. 即, 다시말해서 海上能力 特히 對潛能力과 아시아의 安全保障을 위한 經濟的 寄与를 增大할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日本을 意識한 東「아시아」·西太平洋地域配備 美軍事力 特히 海軍力을 現狀維持시키고 있다.

中共은 反蘇體制에 美國과 함께 日本이 參與할 것을 期待하고 있으며, 美·日安保體制와 駐日美軍의 駐屯을 支持하고 있다. 또한 核武裝을 하는 것은 反對하나, 日本이 軍事力을 增強하는데 있어서는 支持하고 있다.

한편 蘇聯은 日本이 親中共 反蘇路線을 摸索하는데 대하여 強力히 反對하고 있으며, 美·日安保體制의 弱化를 摸索하고 있다. 그리고 日本이 軍事力을 增強하는데는 積極 反對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면서 政治心理的으로 利用하기 위하여 東北亞에 있어서의 軍事力增強을 繼續하고 日本의 周邊 海·空域上에 있어서의 活動을 增大시키고 있다.

其他 「아시아」諸國은 日本이 經濟中心의 地域安保를 위한 寄与

註 76) 朝日新聞, 1979年 9月 18日字(1).

를 增大해 출것을 期待하나, 日本의 本格的인 軍備擴張과 더불어 軍事的 役割이 擴大되는데 대하여는 警戒하고 있다.

以上の 前提와 对内外的 与件을 勘案하여 80年代의 日本의 防衛概念과 中·長期軍事政策·戰略 및 軍事力增強에 대한 展望을 導出해 보기로 한다.

3. 展 望

(1) 防衛概念 :

大規模侵略에 대해서는 美軍이 戰略的 攻勢의 分野를 担当하고 自衛隊는 戰略的 守勢의 分野를 担当하는 防衛概念으로 “侵略의 未然防止”와 “侵略對處”의 兩 側面에서 摸索될 것이다.

(2) 軍事政策·戰略 :

既述한 “前提”에서 言及한 바와같은 軍事政策·戰略을 持續해 나갈 것이다. 다만 ① 特別히 周边 海·空域에 있어서의 監視·警戒 및 活動은 擴大될 것이다. ② “美·日防衛協力을 위한 指針”에 依拠하는 美軍과 陸·海·空自衛隊同의 共同演習은 充實해 나갈 것이다. ③ 韓半島를 包含한 中·日, 蘇聯等의 隣接與心地域에 대한 軍事情報蒐集活動은 強化해 나갈 것이다. ④ 直接的 및 軍事協力에 대하여는 繼續적으로 回避할 것이다, 慎重하고도 漸進的인 間接的인 協力方案을 摸索할 것이다.

(3) 軍事力增強 :

1980年부터 1984년까지의 防衛力整備 5個年計劃에 該當되는

“中期業務見積”(77)을 가능한 한 早期에 達成하도록 積極 推進해 나갈 것이다. 即,

첫째, 第7師團을 機甲師團으로 改編하고(「시끄꾸」)에 混成團을 新編하고, 自衛艦隊所屬 沖繩航空隊를 第5航空群으로 增編~이에 따라 5個航空群이 됨~하며, E-2C 早期警戒機 8台的 導入·配備에 따라 航空總隊에 警戒航空隊를 新編한다는 것이다.

둘째, 海上自衛隊와 定員을 3,650名 增員~總計 4万 6,742名이 됨~하고 航空自衛隊의 定員을 1,800名 增員~總計 4万 7,617名이 됨~한다는 것이다. 同時에 豫備自衛官의 定員을 陸·海·空 各各 5,000名, 1,500名, 1,500名 增員~陸上自衛隊 4万 5,000名, 海上自衛隊 2,100名, 航空自衛隊 1,500名이 됨~한다는 것이다.

셋째, 防空警戒管制를 위한 自動警戒管制組織 (BADGE System)을 更新하는 同時에 各種情報手段을 整備하고, 中央指揮所를 新設, 防衛「마이크로」回線을 整備하며 對電子戰能力的 向上을 위한 各種 施策을 推進한다는 것이다.

넷째, 兵의 充足率을 陸은 89%로, 海·空은 98%로 向上시키고 定年の 延長을 推進한다는 것이다.

註77) 朝日新聞, 1979年 7月 18日字(2) 參照, 毎日新聞, 1979年 1月 5日字(2) 參照.

다섯째, P-3C用訓練裝置, F-15用地上操縱訓練裝置等の 導入과 演習場의 擴張 및 海外派遣訓練의 充實化를 期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裝備의 增強은 다음과 같다.

① 陸上自衛隊: 戰車 約 300 台 (總約 1,110 台 保有), 遠距離 自走火砲 180 門~155 mm 140 門, 203 mm 40 門~, 裝甲車 約 110 台 (總約 700 台 保有), 對舟艇·對戰車誘導彈發射裝置 30 基를 調達하고, 多用途「헬리콥터」 44 台 (總 180 台 保有), 輸送「헬리콥터」等 作戰用航空機 110 台 (總 280 台 保有)를 調達하며, 對戰車「헬리콥터」는 既配置된 2 台의 成果를 보아 今後 方針을 定한다는 것이다. 또한 2 個高射特科 (高射砲) 群의 地對空誘導彈 「호-크」를 改良하고 國産인 短距離地對空誘導彈 (短 SAM) 을 24 基 配備하며, 將來의 防空體制를 早速히 檢討하여 4 個高射特科群의 「호-크」의 後繼에 대한 方針을 決定 한다는 것이다.

② 海上自衛隊: 護衛艦 16 隻, 潛水艦 5 隻을 비롯한 掃海艇, 潛水艦救難母艦, 海洋觀測艦, 補給艦 等 計 39 隻 (約 193 隻, 約 25 萬噸 保有)을 改造하는 한편 現有 護衛艦 6 隻을 改修하여 對潛能力 및 對空能力 (「미사일」 裝備)의 充實化를 推進하고 P-3C 對潛哨戒機 37 台~1978 年度에 8 台 導入이 決定된 것 外, HSS-2B 對潛機 51 台 (總 119 台 保有), 掃海「헬리콥터」 6 台를 包含한 作戰用航空機 96 台以外에 US-1 救難飛行艇, 救難「헬리콥터」, 教育訓練用 航空機等을 整備해 나간다는 것이다. PS-1 對潛飛行艇은 現有機의 評價에 의하여 그 方針을 定하도록 되어 있다.

③ 航空自衛隊：邀撃戦闘機 F-15를 77台~1978年度에 23台導入이 既決定된것 外~, E-2C 早期警戒機 4台~1979年度에 4台導入이 決定된 것 外~, F-1 支援戦闘機 13台 (總 39台 保有), 計 94台 以外에 T-2 超音速高等練習機 23台 (總 79台 保有), 救難「헬리콥터」等を 整備하고 邀撃戦闘機部隊 10個 飛行隊의 維持를 위하여 F-4EJ의 減耗狀況을 보아, F-15를 追加配備한다는 것이다. 또한 地对空「나이크」J의 高射1個隊를 關西地方에 配備하고 将来의 防空体系를 早速히 檢討하여 「나이크」J의 後継方針을 決定한다는 것이다.

④ 彈種間의 均衡을 配慮하면서 彈藥備蓄量의 增加 (14万톤~21万톤)를 推進하며, 彈藥保管, 水電調整, 機雷敷設等の 機能을 改善한다는 것이다.

以上の 防衛力整備 5個年計劃이 達成된 後에는 繼續하여 量보다 質에 優先을 둔 5個年計劃 (1985年~1989年)이 1983年頃에 樹立되고 推進될 것이다. 그 增強優先順位는 海·空·陸의 順이 될 것이다.

对内外的 与件이 劃期的인 変化~韓半島에서의 戰爭勃発, 蘇聯으로부터의 軍事挑発 및 压力加重, 駐日美軍의 撤収 및 美·日安保体制의 弱화와 西太平洋上에 있어서의 美国의 顯著한 後退, 中·蘇戰爭等の 对外的 要因에 의해서 日本国民을 매우 크게 刺戟하는 変化~가 일어나지 않는 限, 1980年度부터 1984年度까지의 中期業務見積은 GNP의 1%以内에서 推進될 것이며, 적어도 2%

以上の 国防費支出～既述한 1985年度의 GNP의 推定額을 約 329兆 「엔」(約 1兆6,450萬「달러」)으로 評價할 경우, 年間 約329億 「달러」(中共의 1976年度 国防費水準)가 되고 蘇,美,中共 다음 世界第4位의 軍事費 支出国이 될 것임～은 对内外의인 与件을 勘案할 때 困難할 것이다.

防衛産業의 發展과 더불어 最新銳의 裝備購入負擔을 輕減시키기 위하여 1980年 後半에는 武器輸出을 漸進的으로 試圖할 것이다.

Ⅲ. 韓半島의 軍事狀況에 미치는 影響

1. 日本의 對韓半島軍事政策의 基本利益

첫째는 緊張緩和와 現狀維持이다. 4強의 中心部에 位置한 韓半島에서의 戰爭은 日本의 包含한 4強關係와 東西關係의 不安定을 招來할 뿐만 아니라, 特히 日本은 中共 및 蘇聯과의 關係가 惡化될 可能性이 매우 크다. 그리고, 韓半島에서의 戰爭勃發에 日本國民이 크게 刺戟을 받아 本格的인 軍備擴大論議가 活発하게 됨으로써 國內政治의 兩極化 내지는 國論分裂로 인한 混亂이 惹起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韓國이 軍事緩衝者 내지는 防波堤로서의 健在 持續이다. 韓半島가 赤化될 경우, 日本에 대한 軍事的 威脅은 增大된다. 特히 大韓海峽, 東支那海의 海上交通路의 安全이 威脅될 것은 明白하다. 이에 따라 日本의 防衛負擔이 增大된다는 것이다.

한편 美國의 對韓軍事公約의 履行与否는 美·日安保體制에 대한 美國의 對日公約과 意志의 直接的인 試驗事例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經濟的 利益의 保護伸張이다. 韓國은 日本에 대해서 美國다음가는 第2의 市場이라는 것이며, 韓國을 日本의 經濟圈內에 包含시킴으로써 政治的 利益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北韓의 市場開拓이라는 點도 考慮되고 있다.

2. 日本의 對韓半島軍事政策의 基本前提

첫째는 韓半島에서의 積極적이고 뜻있는 政治·軍事的 役割을 担当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強大國의 反對와 日本國內與件이 이에 成熟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보다도 더 重要한 것은 南北韓의 拒否反應이다. 또한 日本의 軍事的能力이 不足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日本의 韓國安保에 대한 關心增大이다. 그것은 韓半島의 平和와 安定이 日本防衛概念과 軍事政策·戰略의 하나의 基本前提가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日本의 防衛를 위해서는 韓半島의 戰略的 価値가 거의 絶對的이라고 할 수 있는 地政學的 與件이 크게 作用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對韓半島政策과 관련된 國民的 合意가 形成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日本의 軍事的能力이 不足하고 對韓半島軍事政策이 定立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日本人들의 反韓感情과 또한 對外軍事問題에 대한 具體的인 論議를 禁忌視하는 傾向도 그 要因이 되고 있다.

3. 韓半島의 軍事狀況에 미치는 影響 判斷

첫째는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現狀維持를 위한 安保外交的 役割과 寄與의 은밀한 摸索이다.

이에 대하여는, ①駐韓美軍을 繼續 駐屯할 것을 美國에게 懇願

하고, 이에 는 撤軍時의 補完措置와 南北韓軍事力 均衡維持를 위한 美國의 對韓支援의 持續이 包含된다. ② 日本의 韓國安保에 대한 關心을 漸進的으로 強力하게 表明한다는 것이다. ③ 緊張緩和 및 現狀維持를 위한 政治的 措置 例컨데 國際會議開催, 南北對話推進 策 講究를 美, 中, 蘇 및 北韓當局에 懇懇해 나간다는 것이다. ④ 韓國 및 美國의 反應을 配慮하여 두개의 韓國의 現實化를 위한 北韓當局과의 接近을 조심스럽게 摸索해 나간다는 것이다. ⑤ 韓國의 核武裝과 韓國의 對北韓優位の 軍事力確保에 관하여는, 美國에게 대하여 그 反對意思를 表明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積極的인 對韓軍事協力の 排除이다.

이에 대하여는, ① 韓國과의 軍事同盟의 締結은 強力히 回避하고 ② 韓半島에서의 戰爭勃發時, 派兵은 全的으로 考慮하지 않으며 ③ 對韓軍事協力は 美國을 經由해서 하는 間接方式을 取한다는 것이다.

셋째, 北傀의 全面南侵時는, 美國을 통한 間接的 軍事協力を 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① 美·日安保條約에 依拠, 事前協議의 形式은 거치면서, 駐日美軍基地가 作戰基地로서 活用되는 것을 許容하며 ② 裝備, 軍需品の 對韓販売 및 裝備의 修理를 担当하고 蒐集한 軍事情報를 提供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韓半島의 軍事情報蒐集의 強化이다.

이를 위해서 ① 韓國과의 軍事交流를 擴大하고 ② 韓國의 軍
敎育機關에의 敎育派遣을 摸索하며 ③ 非公式情報關係官會議를 定
期的으로 開催할 것을 摸索해 나가고 ④ 武官機能을 強化하며 ⑤
韓國의 安保關係專門家와의 接觸, 交流를 增大하는 同時에 會議開催를
推進해 나간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周辺海·空域에 있어서의 警戒·監視地域을 漸進적으로
広域化하는 同時에 活動을 漸次 強化해 나감으로써 이에 따른 韓
國 海·空軍~특히 海軍~과의 間接적이고 은밀한 協力の 摸索이다.

이를 위하여 ① 訓練艦艇의 相互交換訪問을 摸索해 나가고 ② 海
軍人士와의 接觸 및 交流를 追求하며 ③ 蘇聯 및 北傀艦艇의 活
動에 대한 情報의 相互交流體制를 摸索해 나가고 ④ 美第7艦隊를
主軸으로 하는 美, 韓, 日間의 3國海軍共同演習을 慎重하게 檢討·
追求해 나간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對韓武器輸出 및 韓國과의 防衛産業協力可能性에 대한
慎重한 檢討 및 摸索이다.

이에 대하여는, ① 美國과 中共, 蘇聯 및 北韓 그리고 國內의
反應을 充分히 配慮하여 慎重히 推進하고 ② 完製品보다는 部品
및 技術의 供給을 優先하여 推進하며 ③ 非戰鬪用裝備 ~특히
電子機器, 軍用通信機材~의 對韓輸出을 段階적으로 摸索해 나간다는
것이다.

IV.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한 寄與度評價

앞에서指摘한 것처럼 日本의 防衛概念과 軍事政策·戰略 및 軍事力增強의 發展과 이에 따른 韓國의 軍事狀況에 미치는 影響을 判斷할 때, 美國과 같이 直接的인 軍事協力을 통한 寄與는 하지 못할 것으로 評價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寄與는 할 수 있을 것으로 評價된다.

첫째는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現狀維持를 통한 平和定着實現을 위한 安保外交的인 寄與이다. 이것은 日本의 安全을 위한 韓國安保의 必要性에 그 戰略的 利益을 가지고 있는 美國에 대한 日本政府當局과 與黨 및 準與勢力의 懇願~ 駐韓美軍의 總統駐屯, 撤軍時의 補完措置, 南北韓軍事力均衡維持를 위한 對韓支援의 持續, 對韓防衛公約의 遵守에 관한 隨時表明, 國際會議開催, 南北對話推進~은 매우 큰 效果를 期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北傀의 全面南侵時에 있어서의 美國을 통한 間接的인 軍事協力에 의한 寄與이다. 이것은 美軍支援隊이 效果的으로 支援作戰을 遂行하기 위해서는, 駐日美軍基地의 作戰基地로서의 當然한 活用과 더불어 日本이 兵站·補給·修理基地로서 또한 役割한다는 것은 必要不可欠의 要素이며, 戰勢를 左右하는 하나의 必須條件이라고 하는 것이다.

셋째는 韓國 海·空軍과의 協力을 통한 寄與를 들 수 있다.

이는 蘇聯 및 北傀艦艇의 活動에 대한 情報의 入手와 美第7艦隊를 主軸으로 하는 美, 韓, 日間의 3國海軍共同演習, 機雷除去作業이 可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韓國의 防衛産業에 대한 協力을 통한 寄与이다. 이는 防衛産業의 發展을 위한 軍事科學技術의 供与 그리고 非戰鬥用裝備 ~특히 電子機器, 軍用通信機械~의 對韓輸出을 期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美國의 對韓軍事寄与의 減縮趨勢, 日本의 對美說得能力, 北傀의 軍事力 增強과 南侵威脅의 繼續, 日本의 對北傀政治的 接近可能性, 日本의 軍事潛在力 等を 勘案할 때, 韓國의 段階的이고 慎重한 日本과의 軍事協力は 韓國의 安保에 限定的이기는 하지만 有効한 寄与을 할 수 있을 것이다.

V. 韓國의 平和統一政策에 活用하는 政策方向

韓國의 段階的이고 慎重한 日本과의 軍事協力은, 80年代의 日本의 防衛概念과 軍事政策・戰略 및 軍事力增強의 展望을 勘案한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한 寄与度面에 있어서 特別히 韓國 安保에 限定的이기는 하지만 有効한 寄与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點을 前提로 하여, 다음과 같은 政策方向을 摸索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即,

첫째, 駐韓美軍撤収 等, 美國의 對韓半島政策에 대한 韓國側 見解를 反映하기 위하여 日本의 對美說得力을 活用한다고 하는 것이다.

둘째, 日本의 올바른 韓國安保에 관한 認識을 擴大하고 우리의 平和統一政策에 대한 理解를 增進시킴으로써 日本의 對北傀政治的 接近을 牽制하고, 同時에 日本의 對中共 및 對蘇關係를 勘案하여 中・蘇의 對北傀說得力을 통해서 北傀當局으로 하여금 南北對話에 臨하도록 活用한다는 것이다. 特別히 이 경우, 日本의 對中共說得力을 活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國土統一院의 日本防衛庁과 統合幕僚會議, 自衛隊 幹部 및 日本防衛研修所, 그리고 軍事專問家와의 接觸・交流 摸索은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國土統一院이 主催하는 安保와 관련된 平和統一 國際學術

會談時，日本의 軍事專問家의 招請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日本에는 世界各國의 武官，特派員들이 集中되고 있으며，朝總聯 等の 親北傀團體와 社會黨，共產黨 等の 反韓團體 그리고 言論界의 偏向的 報道傾向이 있음을 勘察하여，우리의 平和統一政策을 理解하는 層의 底辺擴大를 위한 巡廻講演會 等の 弘報活動을 積極 展開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日本駐在公報館에 國土統一院 派遣 担当官을 두고 弘報 및 情報蒐集을 專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統一研修所에서는 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 人士들의 研修도 計劃·實施토록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要約)

日本の 防衛概念과 軍事力增強 展望
— 韓半島의 軍事狀況 및 緊張緩和에 미치는 影響 —

国防大学院 教授
崔 敬 洛

本 論文은 東北亞秩序의 形態와 韓半島情勢를 考慮한 日本의 防衛 概念과 軍事政策·戰略 및 軍事力增強의 變遷過程을 分析·檢討한 結果를 바탕으로 하여, 그 展望을 導出함으로써 이에 따른 韓半島의 軍事狀況에 미치는 影響을 判斷하고,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한 寄与度의 評價를 試圖해 보았다.

그리하여 韓國의 平和統一政策에 活用하는 政策方向을, 国土統一院의 立場에서 생각해 보았다.

따라서 本 論文은 政策研究報告書의 性格을 띤 것이며, 그 構成에 있어서 I. 日本의 防衛概念과 軍事政策 및 軍事力增強 趨勢, II. 80年代의 日本의 防衛概念과 中·長期軍事政策 및 軍事力增強 展望, III. 韓半島의 軍事狀況에 미치는 影響, IV.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한 寄与度 評價, V. 韓國統一政策에 活用하는 政策方向의 5部로 나누어 分析·評價하였다.

期待되는 效果로서는 80年代의 日本의 防衛概念과 軍事政策·戰略 및 軍事力增強이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한 寄与度を 把握하고, 韓國의 平和統一政策에 活用할 수 있는 國防政策的 考慮事項의 把握에 그 重點을 두었다.

I. 日本의 防衛概念과 軍事政策 및 軍事力增強 趨勢에 있어서는, 韓國戰爭의 勃發을 契機로 「택아더」 聯合國司令官의 指令에 의하여 警察隊備隊라고 하는 이름으로 發足, 오늘에 이룬 自衛隊가 全적으로 占領軍인 美軍의 供与裝備에 의해서 보잘것 없는 장난감 軍隊

로서 出發했던 29年前과는 달리, F-15, P-3C, E-2C, 74式戰車, L 미사일 1 等 最新銳裝備로 近代化된 軍隊로서 急速히 成長하고, “侵略의 未然防止” 그리고 “即応対処”라고 하는 防衛概念에 立脚하는 “守勢的 攻勢를 加味한 專守防衛戰略”을 追求하게 된 變遷過程을 防衛力整備計劃 着手 以前(1957年)의 時期와 그 以後의 時期로 区分하여 分析·檢討하였다. 여기에서 特히 重要的 事實은, 日本의 防衛概念과 軍事政策·戰略의 形成 및 軍事力增強이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의 緊要한 戰略的 考慮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點이다.

II. 80年代의 日本의 防衛概念과 中·長期軍事政策 및 軍事力增強 展望에 있어서도 역시 美·日安保條約體制는, 그 支柱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大規模侵略에 있어서는, 美軍이 戰略的 攻勢의 分野를 擔當한다고 하는 “侵略의 未然防止”概念과, 限定的이며 小規模奇襲侵略에 있어서는 自衛隊가 戰略的 守勢의 分野를 擔當한다는 “即応対処” 概念은, 劃期的인 對内外與件의 變化~社會黨, 共產黨에 의한 執權, 韓半島에서의 戰爭勃發, 蘇聯으로부터의 軍事挑發 및 壓力加重, 美·日安保體制의 弱화와 駐日美軍撤収 및 西太平洋에서의 決定的인 軍事力後退~로 因한 深刻한 不安이 일어나지 않는 限, 日本의 防衛概念의 基本前提로서 持續될 것이다.

따라서 量보다는 質優先의 海·空·陸의 順位로 그 優先順位를 非核重武裝의 方向으로 軍備를 增大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GNP의 2%以內的 國防費支出은 最新銳裝備의 高価化, 短命化와 蘇聯의 軍事的 威脅增大 및 韓半島의 緊張持續要因으로 不可避할

것으로 展望된다. 또한 軍事政策·戰略은 (1) 周邇 海·空域의 警戒·監視範圍와 活動 擴大, (2) 美·日防衛協力指針에 의한 美海·空軍과 陸·海·空日衛隊間의 共同演習의 補充 等 實質的인 共同作戰 遂行樣態의 充實化, (3) 最新銳裝備購入費의 負擔輕減을 위한 武器輸出의 漸進的 試圖, (4) 韓半島를 包含한 隣接關心地域에 관한 軍事情報蒐集 活動의 強化 (5) 韓國과의 直接的인, 軍事協力は 繼續 回避하면서 慎重하고 漸進的인 間接的 協力方案의 摸索이 될 것이다.

Ⅲ. 韓半島의 軍事狀況에 미치는 影響을 以上에서 評價한 바에 의하여 尋出하면, (1) 美, 蘇, 中共의 反對와 日本國內與件의 未成熟, 南北韓의 拒否反應, 日本의 軍事能力의 不足으로 韓半島에서의 積極的이고 뜻있는 軍事的·政治的 役割擔當은 不可能하다는 것.

(2) 日本의 韓國安保에 대한 關心이 增大되고 있다는 것. (3) 對 韓半島軍事政策과 관련된 「콘센서스」가 形成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韓半島의 軍事狀況에 대하여 間接的인 影響만을 미칠 것으로 判斷된다.

Ⅳ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한 寄與度에 있어서는 美國에 比할 것은 못되지만 美國다음으로 間接的인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한 寄與는 할 것으로 評價된다. 即, (1) 安保外交的 役割 및 寄與를 慎重하고도 隱密하게 摸索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① 撤軍時의 補充措置 및 南北韓軍事力 均衡維持를 包含하여, 駐韓美軍이 繼續駐屯할 것을 美國에 대해 懇懇하고, ② 韓國安保에 관한 關心을 漸進的으로 強力하게 表明하고, ③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을 위한

政治的 措置～國際會議開催, 南北對話의 再開～의 請究를 美, 蘇, 中共 및 北韓에 對해 總攬하며 ④ 韓國과 美國의 反應을 配慮하면서, 두개의 韓國의 現實化를 爲하여 北韓에 對한 政治的 接近을 慎重하게 試圖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⑤ 韓國의 核武裝 및 韓國이 北韓보다도 優越한 軍事力을 確保하는데 있어서는 그 反對意思를 美國에 對해 表明할 것이다. (2) 北韓이 全面南侵時는, 美國을 통한 對韓軍事協力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① 駐日美軍基地를 作戰基地로서 許容하고, 同時에 日本의 一部를 兵站基地로 提供할 것이며, ② 裝備·軍需品の 對韓販賣 및 修理를 擔當하며, ③ 蒐集된 軍事情報를 韓國과 美國에 提供할 것이다. (3) 韓半島의 軍事情勢에 關한 軍事情報蒐集 活動의 強化를 통하여 遂行할 役割을 包含한 對備策을 講究해 나갈 것이다. 이를 爲하여, ① 軍事交流를 擴大하고, ② 教育派遣 및 非公式情報關係官會議의 定期的 開催를 摸索하며, ③ 武官機能을 強化하고, ④ 安保專門家와의 接觸·交流 및 會議의 開催를 推進해 나갈 것이다. (4) 周邇 海·空域의 警戒·監視地域의 広域化와 活動의 強化를 追求함에 따른 韓國과의 間接的이고 隱密한 協力～特히 海軍～을 摸索해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① 訓練艦艇의 交換訪問을 摸索하고, ② 海軍人士와의 接觸·交流를 追求하고, ③ 蘇聯 및 北韓海軍艦艇의 活動에 關한 情報交流를 推進하며, ④ 美第7艦隊를 主軸으로한 美國, 韓國, 日本의 3個國海軍의 共同演習을 慎重히 檢討해 나갈 것이다. (5) 對韓武器輸出 및 防衛産業의 協力可能性을 慎重히 打診해 나가면서,

이를 徐徐히 摸索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① 美国, 蘇聯, 中共, 北韓 및 国内反應을 配慮하면서, 慎重히 推進하고, ② 防衛産業과 관련된 軍事科学技術協力 및 原資材와 部品の 供給을 優先的으로 推進하며, ③ 非戰鬪用裝備 ~ 電子機器, 通信機材 等 ~ 의 輸出을 摸索할 것이다.

結論적으로 (1) 日本은 徐徐히 그리고 慎重하게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平和定着 및 利益伸張을 위하여, 韓國과의 間接的이며 隱密한 軍事協力關係를 摸索할 것이다. (2) 日本은 向後 10年内에 美国을 대신한 韓國安保와 관련된 政治·軍事的 役割과 寄与를 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지는 못할 것이다. (3) 日本의 軍事協力政策은, 美国 및 蘇聯, 中共, 北韓의 反應과 国内政治的 要因을 勘案하여, 慎重한 姿勢와 一進一退를 反覆하는 狀況을 나타낼 것이다. (4) 美国의 對韓軍事寄与의 減縮趨勢, 日本의 對美說得力, 北韓軍事力の 大幅的인 增大에 따른 南侵威脅의 加增, 日本의 北韓과의 政治的 接近 可能性, 日本의 軍事潜在力 等を 勘案할 때, 韓國의 段階的이고 慎重한 日本과의 軍事協力は 韓國安保에 限定的 이나마 有効한 寄与를 할 수 있을 것으로 判斷된다.

끝으로 韓國의 平和統一政策에 活用하는 政策方向을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1) 駐韓美軍撤収 等, 美国의 對韓安保政策에 있어서 平和統一政策을 包含한 韓國側 見解를 反映하기 위하여, 日本의 對美說得力을 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2) 北韓当局이 南北對話에 臨하도록 中共. 및. 蘇聯에 對한 日本의 影響力을 十分 活用하여야 할 것이다.

(3) 自衛隊 및 軍事專門家의 韓國의 平和統一政策에 對한 認識을 提高시킴으로써 日本의 對北韓 政治的 接近의 可能性을 排除토록 하기 위하여, 国土統一院 主催의 韓國安保와 關連된 平和統一政策에 對한 國際會議에, 特히 日本防衛庁 및 統合幕僚會議 幹部와 防衛研修所 等 軍事專門家를 招請하고, 이와 併行하여 訪問摸索 等 接觸. 交流를 檢討. 推進하여야 할 것이다.

(4) 日本은 世界各國의 武官과 特派員이 集結되고, 朝總聯, 社會黨, 共產黨 等 親北韓勢力과 더불어 反韓勢力 및 言論의 偏向的 報道 傾向이 뿌리깊게 尚存 하고 있음을 勘案하여 日本現地에서 韓國安保와 關連된 平和統一政策에 對한 세미나 또는 講演會 等を 廣範하게 開催함으로써 우리들의 平和統一政策에 對한 理解層과 同調勢力을 充實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駐日公報館에 国土統一院 派遣의 專門擔當官을 常駐시킴으로써 弘報活動과 情報蒐集活動을 擔當. 推進토록 措置되어야 할 것이다.

(6) 統一研修所에서는 우리들의 平和統一政策을 充分히 理解하고 確信을 갖고 活動하도록 하기 위하여, 在日大韓民國居留民團의 指導級 人士를 對象으로 하는 現地研修計劃도 推進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A CONCEPT OF DEFENSE AND PROSPECT OF MILITARY REINFORCEMENT IN
JAPAN: An impact on the military situation and tension reduc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young-rak Choi
Professor
The National Defense College

The primary intention of this paper is to scrutinize the impact of the Concept of Defense, Military Policy/Strategy, and Military Reinforcement in Japan up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finally assessing the contribution to the tension reduction and stability of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factors related. The result, I hope, will, by showing the policy-direction, be applied to the form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policy of the National Unification Board.

The attribute of this report is policy-study, and composed of five parts: I) The concept of defense, military policy, and the trend of military reinforcement in Japan, II) The concept of defense, mid- and long-range military policy, and prospect of its military reinforcement of Japan in 1980s; III) The impact on the military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IV) The Assessment of its contribution to the reduction of th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V) The application to the policy-direction of Korean Unification Policy.

Expected effects of this paper are: first, to detect the degree of contribution of the concept of defense, military policy/strategy, and military reinforcement of Japan in 1980s to the reduc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tension and the stability of Korea; second, to grasp the consideration related to the defense policy that can be applied to the form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policy of Korea.

I. The Concept of Defense, Military Policy, and the Trend of Military Reinforcement in Japan

The Self-defense Force of Japan, created under the control of General MacArthur right in the flow of the Korean War as 'Police preparatory Force', has gained a strong position of highly modernized military force which is equipped with F-15, P-3C, E-2C, 74-tank, missile, and various modern weapons, and which is provided with qualitatively high military capability based on the "Defense Strategy" modified with 'prevention of invasion', 'quick response', and 'defensive attack'.

The growing process of the Self-defense Force is analyzed in this part according to the two-period-chronological-division:

before and after the Defense Ability Arrangement Plan in 1957.

What is important in this part is the fact that th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defense, military policy/strategy, and military reinforcement in Japan has been strongly guided by the tactical and strategical considerations of the Asia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I The Concept of Defense, Mid- and Long-range Military Policy, and Prospect of its Military Reinforcement of Japan in 1980s

The U.S.-Japan Security Treaty is and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pillar of the fundamental defense system of Japan. Accordingly, the two principles: the concept of 'prevention of invasion'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pe with the large-scale armed aggression against Japan, the 'quick response' that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 will cope with the limited local warfare, will serve as the framework of primary defense system, unless there are epochal internal or external changes -- coming into the power of the Socialist Party or Communist Party, anoth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 serious military threat or provoking of the Soviets, weakening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or withdrawal of the U.S. Forces from Japan, or pulling-back of the substantial forces of the U.S. from the

West Pacific. Nevertheless, the military reinforcement will go along with the line of non-nuclear principle, putting its priority-order qualitatively rather than quantitatively to the maritime, air, and ground forces. The defense spending of approximately 2 percent of GNP will be inevitable because of the growing military threat of the Soviets, continuing tension on Korean Peninsula.

The military policy/strategy will be: 1) increase of surveillance of nearby sea and air space, 2) enhancement of cooperative ability of the Ground, Maritime, and Air Self-defense Force of Japan with the Navy and Air Force of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U.S.-Japan Security Treaty, 3) gradual increase of export of arms in order to lighten the burden of the defense efforts, 4) maintaining the military data-gathering activities in nearby areas including Korean Peninsula at higher level than any other fields, 5) Japan's continuing to avoid the direct military cooperation with Korea, but with the possibility of gradual increase of indirect cooperation.

III. The Impact on the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ly, Japan's positive and significant military/political role on Korean Peninsula will be impossible because of the.

objections of the United States, of the Soviets, and of China. Furthermore, the domestic condition is premature in Japan, and there exists rejection reaction both in Korea and North Korea, while the Self-defense Force per se is hardly capable in terms of military strength. However, the second result of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interest regarding the security of Korea is increasing. Third and finally, this analysis clarifies that Japan will give only an indirect influence upon the military situation on Korean Peninsula in virtue of the fact that the consensus toward military policy about Korean Peninsula is not formed yet.

IV. The Assessment of its Contribution to the Reduction of th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Japan is not naturally comparable to the United States in this analysis though, Japan is expected to influence indirectly the reduc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ension and the stability.

1) Japan will seek implicitly to contribute to the tension reduction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diplomatic role at security dimension level: a) Japan will suggest the United States to take a complementary action, when the United States withdraws the Forces in Korea,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Korea and North Korea; or, it will suggest to keep the level of the United States Force in Korea; b) Japan will show its keen interest about Korea gradually; c) Japan will try to persuade the United States, the Soviets, China, and North Korea to take proper political actions --- like opening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reopening of South-North Talk; d) Japan will cautiously approach North Korea sensitively observing reaction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recognizing as-a-matter-of-factly 'two Koreas'; e) Japan will remind the United States that it is against Korean nuclear armament, and at the same time Korean military supremacy over North Korea.

2) In the case of North Korean invasion against Korea, Japan will cooperate with Korea through the United States: a) Japan will permit the use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bases in Japan as operation bases, and in the same way, a part of its territory, as logistic bases. b) Japan will sell the munitions and supplies to Korea providing some needed services. c) Japan will provid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th the military data gathered by itself.

3) Japan will take its own counter action through its enhancement of data-gathering activities about the military situation on the

the Korean Peninsula: a) increase of military exchange, b) educational program and promotion of periodical informal meeting of persons concerned, c) improvement of functions of military attache, d) encouragement of contact, exchange, and conference of security specialists.

4) Japan will seek to improve the indirect and implicit cooperation with Korea --- specially with Navy --- in pursuing the expansion of surveillance area of nearby sea and air space, and improvement of the activities: a) planning the exchange visits of trainee ships, b) expansion of contact and exchange of Navy personnels, c) exchange of informations upon the Soviets and North Korea, d) examination of joint operation drills of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with the Seventh Fleet as the Axis of their operation.

5) Japan will gradually and cautiously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exporting arms to Korea, and of cooperation with Korean defense industry: a) examination of the reac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Soviets, China, and North Korea, as well as its own domestic attitude, b) giving priority to the cooperation of military scientific technology related to the defense industry, and implementation of supplying war resources, c) promotion of

exporting noncombatant equipments -- electronic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Conclusions

1) Japan will cautiously and gradually seek to have indirect and implicit military cooperation with Korea in order to reduce Korean Peninsular tension and to effort for stabilizing peace on the Peninsula, increasing its interest.

2) Japan will not be able to take up for the United States to contribute for the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thin ten years.

3) Japanese policy of military cooperation will continue to ebb and flow toward Korea, observing the reac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Soviets, China, and North Korea.

4)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will be effective to a limited degree when the following facts are taken for granted: trend of decrease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contribution to Korea, Japanese pledge to the United States, a large-scale reinforcement of North Korean armed forces and increasing threat of invasion against Korea, the possibility of Japanese approach to North Korea, Japanese military potentials.

Considering these Japanese environment, the National Unification Board should provide more opportunities with Japanese people for them to know more about our peaceful unification policy through various lectures, seminars, and public meetings. 5) I suggest the National Unification Board to dispatch a personnel to reside in Japan -- Korean Information Center in Japan -- to be in charge of Public Relations and data-gathering activities. 6) 'On the spot education program' in Japan under the auspices of the National Unification Board for the important leaders of the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s highly advisable. This will result the better understanding and firmer conviction upon the peaceful Unification policy among the permanent residents in Japan.

Finally, the suggestions for the policy direction of the Korean peaceful unification policy are: 1) It is highly advisable that we use Japan to persuade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problems like the withdrawal plan of American forces in Korea, the United States Security Policy for Korea, and peaceful unification policy of Korea. 2) It is suggestible that Japan should influence China and the Soviets to help North Korea come to the South-North Talk table. 3) The National Unification Board will have to increase opportunities for the defense specialists of Japan -- the specialists from the Ministry of Defense, Japan, Joint Staff Committee, the Defense College, and other military specialists -- to know more about the peaceful unification policy of ours, sponsoring various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opportunities for mutual contacts and exchange visits for the specialists. These will have some effect of preventing the specialists from approaching North Korea. 4) In Japan, there are many pro-North Korean groups -- Japan Socialist Party, Japan Communist Party, North Korean sectors -- including quite a number of military attaches and special correspondents from various countries. In addition, it is well known that the Japanese mass-media are tilted against Korea by and large.